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정책연구 2016-28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성명재

정책연구 16-28

2017. 1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성명재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Univ. of Wisconsin-Madiso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전공: 계량경제학, 재정학)를 취득하였다. 한국조세연구원(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1년간(1992~2013)(선임)연구위원과 연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세, 분배·복지, 공공기관 분야의 관련 연구를 담당하였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및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외통상 분야에서, 한·EU 및 미국 간 WTO 주세분쟁, 한·미 담배 관련 통상협상 시에 우리나라의 정부 대표로 임명되어 활동하였고, OECD의 각종 Working Party에서 각종 조세 관련 국제현안 논의에 참여하여 함께 작업하였다. 한국국제경제학회의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경제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로는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Income Distribution in Korea”(Review of Income and Wealth, 2011, 공저), “Maximum Score Estimation with Nonparametrically Generated Regressors”(The Econometrics Journal, 2014, 공저), “Square Density Weighted Average Derivatives Estimation of Single Index Models”(The Korean Economic Review, 2014),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on Intra-familial Transfers”(Journal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2016),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재정학연구, 2016),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방법과 추정치의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2015, 공저) 등이 있다.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1판1쇄 인쇄 | 2017년 1월 13일

1판1쇄 발행 | 2017년 1월 24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7

ISBN 978-89-8031-791-2

5,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7002242)

CONTENTS

요약	5
Ⅰ. 서론	15
Ⅱ.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방법	17
1. 선행연구 고찰	17
2.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21
3. 국제비교의 의의와 기대효과	23
Ⅲ. 우리나라 소득세의 위상과 기능	24
1. 세수 추이	24
2. 소득세 부담 구조	26
3. 과세자비율	29
4.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31
Ⅳ. 주요 선진국의 소득세 위상과 기능	40
1. 소득세 세수비중의 국제비교	40
2. 소득불균등도의 국제비교	41
3.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43
4. 과세자비율 및 누진도 변화추이	46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50
참고문헌	52
부록	54

CONTENTS

표 목 차

<표 1> 국세 세목별 세수추이	25
<표 2> 소득계층별 시장소득, 근로·종합소득세 분포 추이	28
<표 3> 근로소득세의 총급여 구간별 결정세액 부담비중 (2014년 귀속분 기준)	33
<표 4>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 구간별 결정세액 부담비중(2014년 귀속분 기준)	34
<표 5>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결정세액 부담비중(2014년 귀속분 기준)	35
<표 6> 지니계수 및 소득재분배 효과, 누진도 지수(Suits 지수)의 변화 추이	37
<부표 1>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자비율 비교	54

그 림 목 차

[그림 1] 비례소득세제 하에서 소득세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모의실험 기준)	19
[그림 2] 누진세율구조 하에서 소득세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모의실험 기준)	20
[그림 3] 소득세 각종 공제항목별 순차적 축소조정시의 효과	21
[그림 4] GDP 대비 각 세목의 세수비중 추이	26
[그림 5] 근로·종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과세표준이 양(+))인 소득자 기준)	30
[그림 6] 근로·종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결정세액 기준)	30
[그림 7] 근로·종합소득세의 누진도(Suits 지수)와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하락률) 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38
[그림 8] 근로·종합소득세의 누진도(Suits 지수)와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하락률) 추이(1인 가구 포함 전국가구 기준)	39
[그림 9]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의 국제비교(OECD, 2012년 현재)	40
[그림 10] 소득불균등도의 국제비교(OECD, 2012년, 지니계수 기준)	41
[그림 11]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2012 _{sus} , 지니계수 하락률)	43
[그림 12]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공적이전소득(현금급여)과 직접세 분해(2012년, 지니계수 하락률)	44
[그림 13] 직접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비교(2012년, 지니계수 하락률)	45
[그림 14]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자비율 비교	47
[그림 15] 시장소득 10분위배수 변화 추이: 영국과 한국	48
[그림 16] 소득세 10분위배수의 변화 추이: 영국과 한국	49



요약

1. 서론

- ▶ 본 연구는 소득세의 과세자비율,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소득세의 부담구조와 위상, 소득재분배 기능의 현황 점검, 정책시사점의 도출 등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함
- ▶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이 48% 수준(2015년)으로 급상승하여 소득세의 개세주의 원칙이 적정 수준 아래로 위축·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또한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
 - 다만 사실관계 검증, 구체적인 자료 제시, 또는 객관적 논거 없이 막연하고 주관적인 믿음에 기초하여 일방적·무비판적으로 그런 주장이 제기
 - 선진국 사례분석에 대한 비교를 통해 소득세 부담구조와 누진도, 재분배 기능 등에 대한 이해증진과 함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심층 분석 등 기초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료구축이 긴급
- ▶ 본 연구는 각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OECD)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발행·제공하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축적·비교함으로써 객관적·합리적 관점에서 기초정책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를 수행

2. 선행연구: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 ▶ 일반인들은 소득세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
 - 심지어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동일시하는 오해도 비일비재
- ▶ 경제학적 관점에서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는 개념상 분명히 구분

- 세부담의 누진도: 소득계층별 세금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누진도가 높을수록 세금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지는 특성
 - 소득재분배 효과: 세금 부과 전·후소득의 상대분배격차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흔히 소득불균등도의 변화율로 표현 가능
- ▶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부담의 누진도(세금 1원당 재분배 효과)와 세수의 곱으로 나타남
-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세부담의 누진도는 세수와 역의 관계가 존재
 - 그러므로 누진도가 높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누진도를 더 높일 경우 세수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소득재분배 총효과는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 존재(성명재, 2016)
- ▶ 성명재(2016)는 소득세의 세율체계가 주어진 상태에서 각종 (소득)공제 수준이 변화하는 경우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 역 U자 형태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가설이 성립함을 검증
- 세율의 증감은 상기 역 U자 곡선의 위치를 상·하방으로 이동시키는 특성을 보유
 - 그는 모의실험을 통해 현행 소득세 체계 하에서 상기의 역 U자 관계곡선 중 우하향하는 부분에 위치해 있음을 규명
 -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소득공제 축소 등을 통해 세부담의 누진도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증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
- ▶ 성명재(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제수준이 과도하여 소득세의 누진도는 상당히 높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현행 세율체계 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보다 작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유추 가능
- 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이 48%에 이를 정도로 면세비율이 높은 것의 근본원인은 공제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사
 - 과도하게 높은 공제수준과 그로 인한 높은 면세비율이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의 누진도를 높이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는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3. 우리나라 소득세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가. 세수 및 세부담 현황

- ▶ 국세 세수는 2000년 92.9조원, 2005년 127.5조원, 2010년 177.7조원에서 2015년 217.9조원으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5.8%(기하평균 기준)씩 증가
 - GDP 대비 세수비중은 각각 14.6%, 13.9%, 14.0%, 14.0%로, 큰 변화가 없었음
 - 소득세 비중은 2.8% 2.7%, 3.0%, 3.9%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
- ▶ 2006~2014년 동안 가구당 평균 시장소득은 3,429.9만원에서 4,305.6만원으로 연평균 (기하평균 기준) 2.88% 증가
 - 같은 기간 근로·종합소득세는 연평균 3.49% 증가(134.9만원 → 177.5만원)
 - 가구당 평균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의 (시장)소득탄력성은 1.21
 - 실효세율은 2006년 3.93%에서 4.12%로 소폭 상승

나. 소득세의 부담 분포와 과세자비율

- ▶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의 누진도 측정을 위해 두 가지 지표(지수)를 사용
 - Suits 지수: -1과 1 사이의 값을 지님. 1에 가까울수록 누진도가 커지고, -1에 가까울수록 역진도가 커짐. 0인 경우에는 소득비례적(중립적)임을 시사
 - 10분위배수 = 10분위 값 ÷ 1분위 값
- ▶ 시장소득의 상대격차(10분위배수)(소폭 상승):
 - 2006년 14.1배 → 2010년 16.5배 → 2014년 16.6배
 - 근로·종합소득세: 2006년 311.3배 → 2010년 630.1배 → 2014년 749.5배
 - 근로·종합소득세의 10분위배수가 시장소득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은 근로·종합소득세 부담 분포가 누진적임을 의미
- ▶ 근로·종합소득세의 10분위배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은 누진도가 확대되었음을 의미
 - 단, 누진도의 확대가 반드시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음
 - (근로·종합)소득세의 경우 누진도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 위치하므로, 누진도의 확대는 오히려 소득재분배에 부정적 영향

- ▶ 근로·종합소득세의 누진도 확대의 원인은, 주로 공제 확대에 의한 과세자비율의 하락과, 저출산·인구고령화로 나타나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가 동인
- ▶ 근로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은 1995년 68.8%였으나, 이후 하락추세를 보여 2005년 51%로 급전직하하였으며, 이후 회복추세를 보여 2013년 67.6%에 도달하였으나, 2014년에 다시 51.9%로 대폭 감소
 - 1995~2005년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자비율의 하락은 주로 대폭적인 소득공제 및 그에 따른 면세점의 상승에 기인
 - 2014년의 과세자비율 급락은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제액의 확대에 기인
- ▶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자비율은 2005년 44.5%에서 2010년 56.6%, 2014년 71.5%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
 - 이전 기간에는 공식통계가 없지만, 최근까지 과세표준이 양(+)인 소득자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도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

다.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 ▶ 근로소득세의 세부담 구조는 상위 19.15%의 소득자가 근로소득세 세수의 90.09%를 부담할 정도로 집중도가 매우 높은 구조
 - 총급여 5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0.04%에 불과하지만 결정세액은 약 2조 3천 억원으로 근로소득세의 9.0%를 담당
 - 총급여 1억원 이상인 누적 소득자 3.15%가 전체 세수의 51.64%(13.1조원) 부담
 - 총급여 5천만원 이상의 누적 근로소득자(전체의 19.15%)가 전체의 90.09% 부담
-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소득자는 8.6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부담하는 누적 종합소득세는 전체의 87.11%에 이르러, 역시 세부담의 집중도가 매우 높음
 - 종합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소득자(0.31%)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6조 8,654억원으로 전체의 33.01%를 차지
- ▶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소수의 최상위 소득자(예를 들면 최상위 10% 또는 20% 이내)들이 세부담의 거의 대부분(대체로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구조

- 특히 근로소득세의 면세자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은 것도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데 일조
- 높은 면세자비율이 세부담의 누진도를 높게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소득재분배 효과 측면에서는 오히려 동 효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작용(성명재, 2016)
- ▶ 근로·종합소득세 모두 최상위 20% 이내의 고소득층이 대부분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만큼, 그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과세자의 경우 실제적인 소득세 부담 기여도는 제한적이거나 매우 미미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
- ▶ 근로·종합소득세의 Suits 지수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누진도가 소폭 완화되는 추세를 시현(1982년 0.41647 → 1990년 0.34819 → 2000년 0.30521)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상승 반전
 - 2000년 0.30521 → 2005년 0.34440 → 2010년 0.35408 → 2014년 0.35769
- ▶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세전·세후소득의 지니계수 하락률로 측정)
 - 1980년의 경우 추세적으로 상승
 - 1990년대에는 하락추세
 - 2000년대 이후에는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소폭 상승하는 추세
 - 전체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3~4%대 중반의 범위 사이에서 횡보
- ▶ 2006~2014년 기간은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 다만 2012년과 2014년에는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정(+)의 값을 시현
 - 일반적으로 공제체계가 변동하는 경우 양자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세율이 함께 변화하는 경우에는 상관관계의 부호가 바뀌기도 하는 것으로 추정

4. 주요 선진국의 소득세 위상과 기능

가. 소득세 세수비중의 국제비교

▶ 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평균 8.8%

- 덴마크가 26.1%로 가장 높고 아이슬란드와 핀란드가 각각 13.8%와 12.8%
- 반대로 슬로바키아는 2.9%로 가장 비중이 낮고 우리나라는 3.7%로 체코와 함께 두 번째로 비중이 낮음

▶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득세 비중이 낮은 편

나. 소득불균등도 및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OECD 36개국의 산술평균이 0.475

-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0.590, 2011년 Census Bureau 자료 기준)
- 가장 낮은 국가는 한국(0.357, 2014년 저자추정치 기준)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칠레(0.503)가 가장 높고, 덴마크(0.249)가 가장 낮음

- OECD 회원국의 산술평균은 0.323
- 우리나라는 0.320으로 평균치와 유사(중간 순위)

▶ 재분배 이전의 소득불균등도는 우리나라가 최저이지만, 재분배 후의 경우에는 OECD 중간 정도

- OECD 회원국의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공공부문의 소득재분배 효과(지니 하락률)는 32.0%
- 우리나라는 10.6%로 OECD 평균에 크게 미달

▶ 공적이전과 직접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국가는 아일랜드로 47.8%

- 핀란드, 슬로베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프랑스, 헝가리, 그리스 가 40%를 초과
- 반대로 멕시코가 3.2%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작고, 터키, 칠레 등이 그 다음
- 우리나라는 9.2%(2012년 OECD IDD 기준) 또는 10.6%(2014년 저자추정치 기준)
-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2015년 기준)가 11.4%

다.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세비교

- ▶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직접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현금의 형태로 지원된 공공이전지출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이 특징
- ▶ 직접세보다 현금이전 등 정부의 재정지출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큰 이유
 - 조세는 무차별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대부분 면세자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이 어렵기 때문
 - 반면 재정지출은 지원대상을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따라서 선택적 지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
- ▶ 소득세만을 대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공하는 OECD 자료가 이용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포함한 직접세를 기준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
- ▶ 직접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우리나라가 4.5%로, 슬로바키아(2.4%)와 폴란드(3.0%)보다 크지만, 이들 두 나라를 제외하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직접세 의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작은 편
 - 미국(18.9%)이 가장 크고, 아일랜드와 네덜란드가 각각 12.9%와 12.4%
 - 대부분 10% 내외 수준
 - 우리나라의 소득세 집중도(누진도)가 지나치게 높은 이유는 과도하게 면세점을 높게 책정하였기 때문이며,
 - 그 결과 소득세수가 희생되면서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축소

라. 소득세 과세자비율의 국제비교

- ▶ 자료가 이용가능한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싱가포르, 영국, 미국, 우리나라의 7개국을 대상으로 소득세 과세자비율을 비교
- ▶ 2014년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은 51.9%와 71.5%
 - 최근 수년 동안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이 급속히 상승
 - 지난 10여 년간 근로소득세의 과세자비율도 완만하게 상승하였으나 2014년 크게 하락
- ▶ 비교대상 7개국 중 아일랜드만이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보다 과세자비율이 낮을 뿐,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과세자비율이 현저하게 높음

- 영국(90% 수준)과 호주(80% 수준)는 전통적으로 소득세 과세자비율이 매우 높음
- 캐나다의 경우 70% 수준
- 미국은 1990년대 70%대 후반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60%대 초반 수준
- 비록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자비율이 빠르게 상승하였지만 외국에 비해 과세자비율이 아직 낮은 편

마. 10분위배수의 비교: 영국과 한국의 비교

- ▶ (시장소득) 시장소득의 10분위배수는 영국이 1997년 63.9배, 2005년 56.3배, 2010년 45.7배, 2014년 36.1배로 상대소득분배격차가 축소되는 추세
 -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10분위배수는 1997년 8.1배, 2005년 8.9배, 2010년 10.5배, 2014년 10.6배로 완만하게 확대되는 추세
 -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여전히 최소 2~3배 이상 10분위배수 격차가 더 큼
- ▶ 소득세의 10분위배수는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높음
 - 우리나라의 소득세 10분위배수는 급속하게 확대되는 추세
 - 2006년 311.3배 → 2009년 180.2배 → 2014년 749.5배
 - 영국의 소득세 10분위배수는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모습
 - 2006년 86.1배 → 2009년 90.8배 → 2014년 44.3배
- ▶ 영국의 경우 직접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7.2%로 우리나라(4.5%)보다 더 높지만, 누진도 (10분위배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음
 - 영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9.1%로 우리나라(3.7%)보다 훨씬 더 큼
- ▶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누진도도 중요하지만, 세수규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유추 가능

5. 결론 및 정책시사점

- ▶ 우리나라의 근로·종합소득세의 특징은 “높은 누진도와 면세자비율, 낮은 소득세 비중과 소득재분배 효과”로 집약
 - OECD 회원국 중 소득재분배 효과는 최하위권
- ▶ 소득세 부담구조가 누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
 - 성명재(2016)와, 국제비교를 통해 검증한 바를 종합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선진국에서는 소득세의 집중도·누진도가 크지 않은 반면, 과세자비율과 GDP 대비 세수규모가 크다는 공통점을 구비
- ▶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집중도와 누진도가 극단적으로 높고 과세자비율이 낮은 이유는, 세부담 분포를 누진적으로 만들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점은, 높은 세부담의 누진도 처방이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
- ▶ 높은 누진도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하지만, 소득세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좁은 세원, 높은 (한계)세율”에 의존한다는 의미도 공유
 - 이런 구조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
- ▶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선진국에서는 소득세 부담의 집중도·누진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보다 과세자비율이 더 높고 소득세의 세수규모도 훨씬 큼
 - 이런 점들은,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가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 소득세 부담구조의 누진도가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부담의 고소득층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소득세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좁은 세원, 높은 (한계)세율”에 의존한다는 의미
 -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다수를 면세자로 유지하는 세제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데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정작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기초해볼 때,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상화(강화)하기 위해서는 세부담의 누진도와 집중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개세주의 원칙'에 보다 충실할 필요
 - 소득세 과세자의 저변을 넓힘으로써 세수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그 결과 현재 과도하게 높은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가 완화되더라도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필요

- ▶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정상화(강화)하기 위해서는 세부담의 누진도와 집중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개세주의 원칙'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소득세 과세자의 저변을 넓힘으로써 세수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I. 서론

본 연구는 소득세의 과세자비율,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소득세의 부담구조와 위상, 소득재분배 기능의 현황을 점검함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소득세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소득세 정책에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주요 연구목적으로 한다.

최근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이 48% 수준(2015년 귀속분 기준)으로 급상승하여 소득세의 개세주의 원칙이 적정 수준 아래로 위축·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 외중에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또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외견상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거나 객관적 논거가 이루어져 명확하게 사실이 검증되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비판이 정성적 관점에서 막연하고 주관적인 믿음에 기초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무비판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비판은 겉히 수용하되 정량적 측면에서의 정확한 비교와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학문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확한 오해가 많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소득세의 위상이나 기능이 열위에 있음은 인식하고 있으나, 정작 구체적인 정책대안 수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득세 정책 개선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과 학계, 전문가, 정부부처 사이에서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전술하였듯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비교와 점검,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계량지표의 구체화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소득세 부담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정책방향에 대한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분석에 대한 비교를 통해 소득세 부담 구조와 누진도, 재분배 기능 등에 대한 이해증진과 함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심층 분석 등 기초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료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각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OECD)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발행·제공하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축적·비교함으로써 객관적·합리적 관점에서 기초정책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소득분배구조에 대한 변화 추이와 소득세의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아울러 소득세 부담 및 소득분배구조 영향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해 연구자료와 연구방법론을 간략히 소개한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소득세의 과세 현황과 세부담 구조, 소득계층별 분포와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소득분배구조, (개인)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¹⁾, 소득세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와 특징을 논의한다. 제Ⅴ장은 정책시사점을 논하면서 맺는다.

1) 외국자료의 경우에는 여타 세목과 구별하여 (개인)소득세만을 대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분석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 통상적으로는 소득세를 포함하여 각종 직접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료의 불충분성을 감안하여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직접세 중심으로 논의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방법

1. 선행연구 고찰

가. 소득세 누진도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는 소득세 및 소득분배 이슈와 관련한 OECD 보고서 및 관련 학술·정책연구를 분석·검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제비교를 통해 소득세의 누진도, 과세자(또는 면세자)비율,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호관계를 검정한다. 각각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각각의 주제를 별개로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래에서는 각 category별로 주된 관련선행 연구 목록을 제시하였다.

먼저 소득세의 부담구조와 누진도, 소득재분배 기능 사이의 상호관계를 비교한 연구 문헌은 다음과 같다. 성명재·전영준(1998, 2009), 전영준·김재진(2001), 성명재·이명현(2001), 성명재(2002, 2006, 2007, 2011a,b), 전병목·원종학(2003), 성명재·김현숙(2006), 성명재·박형수·전병목(2004), 전병목(2005) 등 다수가 존재한다.

소득분배 및 재분배 효과 분석 관련 연구 검토로는 OECD(2008, 2010, 2011, 2012, 2015), 성명재(2016) 등이 대표적이다.

초고소득층의 소득점유비 추정, 소득분배 현황 분석 및 소득세 정책방향을 제안한 연구로는 Piketty(2014), Piketty & Saez(2001), Saez(2005), Piketty, Saez & Stantcheva(2013), Kim & Kim(2014) 등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가 기존 선행연구들과 가장 큰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는 소득분배 연구, 소득세 과세구조 연구, 형평성(재분배 효과) 연구 등이 개별적으로 수행된 반면 소득세의 누진도, 과세자비율, 소득재분배 효과 등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모의실험을 통해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성명재, 2016)되었다. 그러나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한 국제비교 연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OECD (2012, 2015) 등에서는 OECD회원국 대상의 국제비교를 통해 소득세의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리하여 비교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사실관계의 나열에 중점을 둔 반면 양자 간의 상관관계나 소득세 개편과 관련한 정책시사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위상과, 누진도, 과세자비율, 소득재분배 효과 등의 시계열적

추이와 장단점, 정책현안 등을 점검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이들 요소 각각에 대한 적정 수준 모색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소득세 개편연구는 주로 공제수준과 공제율, 세율체계, 국민소득 대비 면세점의 상대수준 비교, 세수비중 비교 등 주로 제도적 측면에서 소득세제 비교에 치중하고, 분배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제도적 연구보다는 분배격차 및 조세·재정 지출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상호비교에 치중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는 실제적 관점에서 소득세 부담구조(과세·면세구조 등),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 등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지향해야 할 적정 소득세 과세체계의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주력함으로써 선행연구들과 차별화하고자 한다.

나. 소득세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소득세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는 막연하게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동일시하는 오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해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는 개념상 분명히 구분된다. 세부담의 누진도는 소득계층별 세금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누진도가 높을수록 세금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금 부과 전·후소득의 상대분배격차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흔히 소득불균등도의 변화율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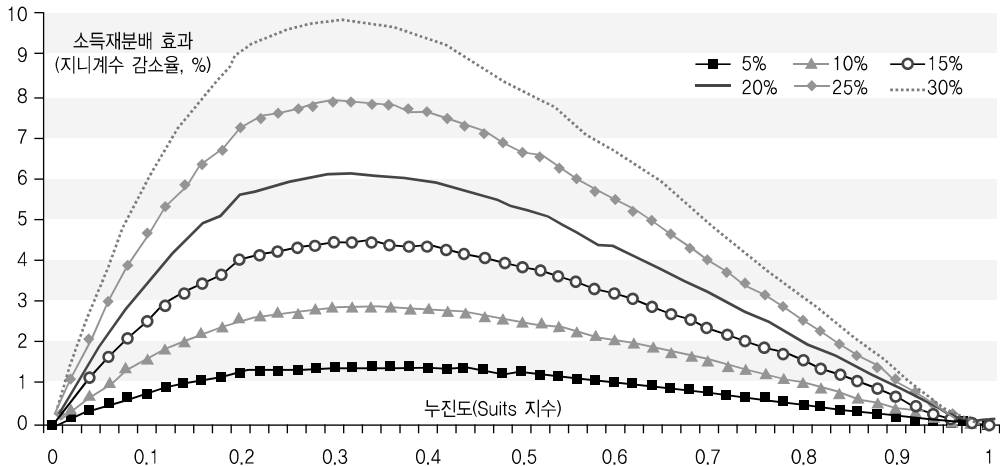
전병목(2005)과 성명재(2007, 2011)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면서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를 함께 추정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causality)나 상관관계(correlation)에 대한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두 요소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비로소 성명재(2016)에 이르러 규명되었다.

성명재(2016)는 소득세의 세율체계가 주어진 상태에서 각종 (소득)공제 수준이 변화하는 경우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 역 U자 형태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가설이 성립함을 검증하였다. 세율체계가 주어진 상태에서 공제의 확대(축소)는 세부담의 누진도를 상승(하락)시키지만 반대로 세수는 감소(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의 증감은 세부담의 누진도와 세수증감이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상대적 크기의 차이에 의해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는 모의실험을 통해 현행 소득세 체계 하에서 상기의 역 U자 관계곡선 중 우하향하는 부분에 위치해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그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소득공제 축소 등을 통해 세부담의 누진도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증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소득세율은 단일비례세라고 전제하고, 공제수준을 0원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소득자의 소득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누진도 지수 중 하나인 Suits 지수²⁾와 지니계수 하락률로 측정된 소득재분배 효과의 조합을 연결하여 궤적을 추정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해당 궤적은 [그림 1]에서 보듯이 역 U자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궤적의 곡률은 세율수준에 따라 상하로 조정되는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1] 비례소득세제 하에서 소득세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모의실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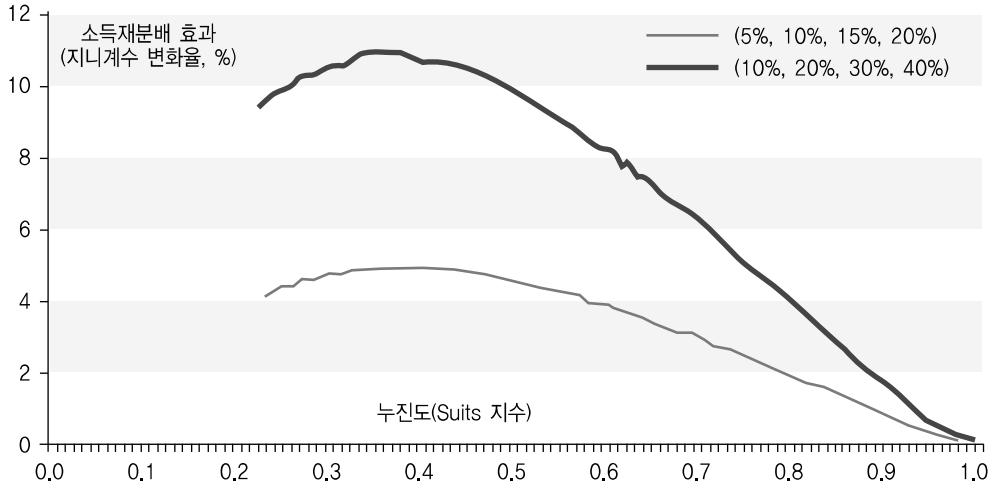


자료: 성명재(2016)의 [그림 1]

그런데 현실의 소득세율 체계는 단일비례세율이 아닌 초과누진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4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상정하고, 공제수준을 0원에서 최고소득자의 소득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확대조정하면서 누진도(Suits 지수)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의 궤적을 추정하여 연결하였다. 단일비례세율인 경우에는 공제수준을 0원으로 하는 경우, 모든 소득자들의 절대소득수준이 비례적으로 감소할 뿐 소득세 과세 전·후의 상대소득분배구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초과누진세율구조 하에서는 공제수준을 0원으로 하더라도 누진세율체제로 인해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누진세율체제를 지닌 소득세제 아래에서는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 역 U자의 형태를 지니지만, [그림 2]에서 보듯이 역 U자 곡선의 좌측 부분 일부가 잘려진 형태의 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세율의 절대수준의 등락에 따라 해당 궤적의 높낮이 역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Suits 지수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부호가 양(+), 0, 음(-)일 때, 각각 세부담이 누진적, 비례적, 역진적임을 시사한다. 절대값의 크기가 클수록 누진도 또는 역진도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누진세율구조 하에서 소득세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모의실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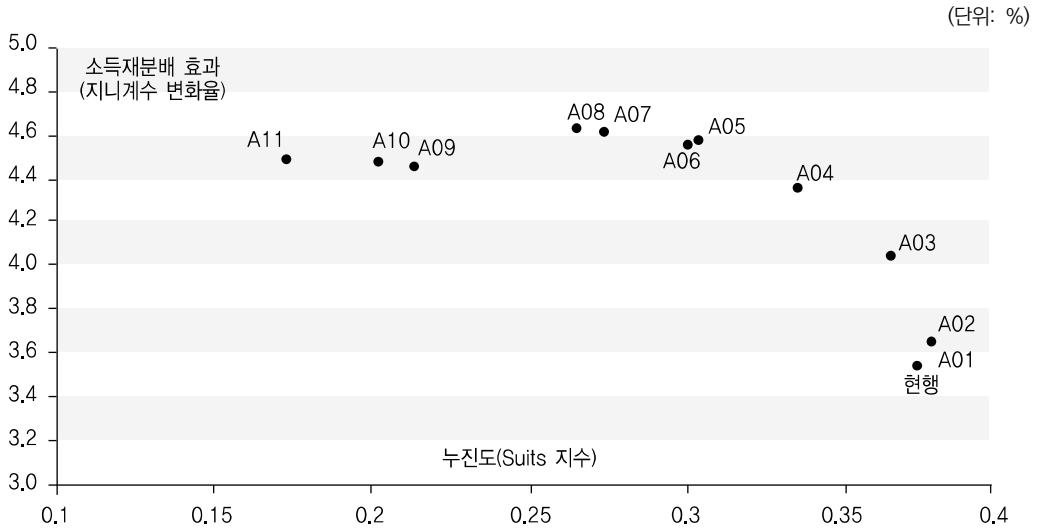


주: 과표 3천만원 이하 5%(또는 10%), 3~6천만원 이하 10%(또는 20%), 6~9천만원 이하 15%(또는 30%), 9천만원 초과 20%(또는 40%)의 경우를 상정하여 모의실험을 수행

자료: 성명재(2016)의 [그림 2]

이런 배경 하에 성명재(2016)는 현행 소득세제(2014년 현재 시점 기준)를 상정하고 실제의 각종 소득공제(일부의 세액공제도 포함)의 공제수준을 가상적으로 축소시키는 경우에 대해 모의실험을 수행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누진도(Suits 지수)와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하락률)의 조합 변화궤적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그림 3]과 같이 공제를 축소할수록 Suits 지수는 계속 하락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초기([그림 3]의 현행→A8)에는 증가하다가 각종 공제수준이 일정 범위를 넘어 축소되는 경우([그림 3]의 A9~A11)에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현행 소득세제가 상기의 역 U자 상관관계 곡선 중에서 우하향하는 부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제수준이 과도하여 소득세의 누진도는 상당히 높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현행 세율체계 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보다 작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이 48%에 이를 정도로 면세비율이 높은 것의 근본 원인은 공제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성명재(2016)의 연구결과를 원용하여 해석하면, 과도하게 높은 공제수준과 그로 인한 높은 면세비율이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의 누진도를 높이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는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소득세 각종 공제항목별 순차적 축소조정시의 효과



- 주: 1. A01 - 근로소득공제 1억원 초과 폐지
 A02 - 근로소득공제 4,500만원 초과 폐지
 A03 - 근로소득공제 1,500만원 초과 폐지
 A04 -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초과 폐지
 A05 - 근로소득공제 완전 폐지
 A06 - 추가공제 폐지
 A07 -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포함) 폐지
 A08 - 자녀세액공제 폐지
 A09 -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A10 -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폐지
 A11 - 기본공제 폐지
2. 상기 방안은 방안별 공제항목을 누적한 것임

자료: 성명재(2016)의 [그림 3]

2.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가. 연구방법과 연구자료

본 연구는 소득세의 위상(세수비중), 세부담의 누진도, 과세비율,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를 조된 목적으로 한다. 주요 외국의 소득세 관련 정보는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국제기구(OECD 등)의 발간자료, DB 조사, 각각 세제당국의 발간자료·통계자료집·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소득세 현황과 부담구조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생산한 기초정보와 함께, 미시서베이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우리나라 소득세의 부담구조,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추정·분석한다. 각국의 수집된 자료를 집대성하고 미시모의실험 추정결과 등을 상호비교하여 우리나라 소득세의 위상과 소득세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시사점을 논의한다.

주요 선진국의 자료수집은 OECD ID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사이트 주소, <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자료의 활용한다. OECD IDD 사이트로부터 주요 소득에 대한 소득불균등도(income inequality)와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기초정보를 추출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정·정리한다. 아울러 OECD에서 발간한 각종 보고서(OECD 연구보고서 및 Revenue Statistics 등 통계자료집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를 이용하여 OECD 주요국의 소득세 누진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와 누진도 등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이해를 증진한다. 다만 소득재분배 효과와 관련해서는 소득세를 여타의 다른 직접세(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세, 재산세 등) 또는 가구가 부담하는 조세총액 등의 총액기준 세부담 항목과 분리하여 소득세만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독립적으로 추출한 상태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직접세 등의 묶음으로 비교한다.³⁾ 그 밖에 OECD 및 각국 세제당국의 통계자료집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소득세 부담구조(면세자, 과세자비율 등)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수규모·비중, 과세자비율 등의 통계는 국세통계연보와 기획재정부의 세수통계자료를 사용한다. 그 밖에 소득세(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등 미시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시자료 분석(모의실험)을 통해 개인별로 소득세 부담을 추정하고 가구별로 합산한 정보를 토대로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한다. 근로·종합소득세의 미시모의실험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를 사용한다. 동 자료는 기본정보가 가구단위로 제공되지만, 소득자 인별·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소득세 부담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인적정보 특성과 지출통계정보(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지출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별 소득세 부담액을 산출함에 있어, 현실에서 입수할 수 있는 미시자료 가운데 가장 신뢰성이 높고 세부담 추정이 가장 용이한 자료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의 위상(GDP 대비 세수비중 등), 누진도, 과세자비율,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추정·비교분석한다. 최대한 분석가능한 과거 시점의 자료까지 확보하여 시계열 분석을 병행한다.

나. 비교대상 포괄범위

OECD DB, 각국 정부의 공식통계 등을 토대로 주요 선진국의 소득세 누진도, 과세자비율, 소득재분배 효과 등의 변화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는 다음의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비교대상 항목별로 이용가능한 자료의 범주와 내용의 차이가 있어 항목별로 비교대상국가의

3) 직접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중 대부분은 (개인)소득세의 효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직접세 효과를 비교하더라도 소득세 효과를 비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범위가 차이가 있다.

소득세 세수규모의 비중과, 소득세를 포함한 직접세 등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는 주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자료원천은 OECD IDD와 OECD의 Revenue Statistics 자료 등을 사용한다. (개인)소득세의 과세자비율 등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별도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OECD 차원의 통계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다. 각국 정부의 공식홈페이지에 실린 각국 정부의 공식통계자료가 이용가능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이들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이다.

3. 국제비교의 의의와 기대효과

선진국 사례가 반드시 적정 수준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득세의 기능과 위상이 잘 정비된 것으로 알려진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소득세의 과세자비율,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 등에 대한 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지향해야 정책방향을 수립·제시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결과를 미리 일부 소개하면,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은 낮은 세수비중, 높은 세부담의 누진도(집중도)와 낮은 소득재분배 효과로 요약된다. 반면 주요 소득세 선진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세수비중, 완만한 누진도와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로 요약되어 대조를 이룬다.

그동안 소득세제 개편을 위해 과세자비율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는 정책방향은 제시되었으나 목표수준을 제시하거나 정량적 측면에서 소득세제 개편 시 예상되는 정책효과를 제시하기보다는 정성적 수준에서의 논의에서 그치는 경향이 짙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비교로부터 도출한 정량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소득세 개편 시 구체적 정책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사후적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세 부담구조가 누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도 커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으나, 양자 간의 상관관계는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기의 명제가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 국제비교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통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높여야 된다는 잘못된 정책시사점을 바로잡고, 바람직한 소득세 개편방향과 정책목표 수준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소득세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국제비교를 통해 소득세 부담구조에 대한 국제적 norm을 도출하고 정책시사점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구조와 비교를 통해 향후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논의한다.



Ⅲ. 우리나라 소득세의 위상과 기능

1. 세수 추이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국세세목별 세수 추이를 살펴본다.

〈표 1〉은 2000~2015년의 국세 세수통계를 보여준다. 국세 세수는 2000년 92.9조원, 2005년 127.5조원, 2010년 177.7조원에서 2015년 217.9조원으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5.8%(기하평균 기준)씩 증가하였다. GDP 대비 세수비중은 같은 시점에 각각 14.6%, 13.9%, 14.0%, 14.0%로, 큰 변화가 없었다.⁴⁾ 이 중 소득세의 비중은 2000년 2.8%, 2005년 2.7%, 2010년 3.0%, 2015년 3.9%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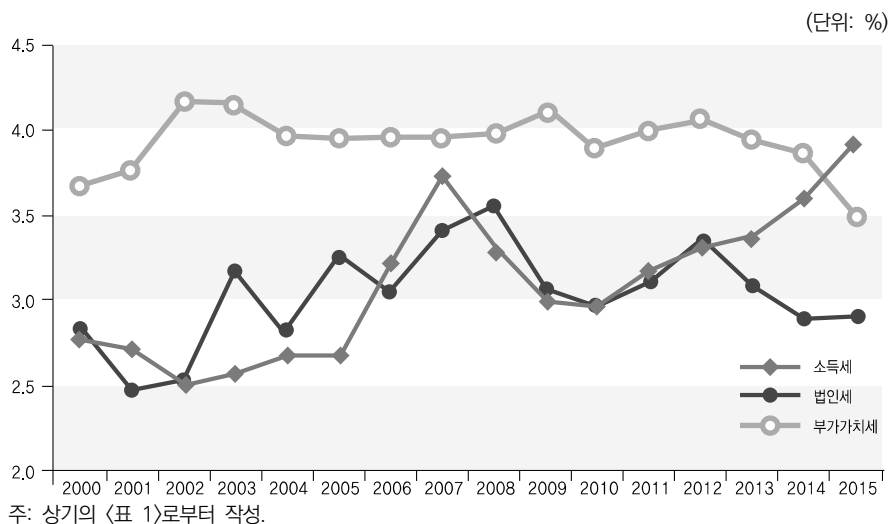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3개 세목은 2015년 현재 세수총액이 159조 9,103억원으로 국세 세수 전체(217조 8,851억원)의 73.4%를 차지한다. 이들 3개 세목의 세수총액이 국세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동 비율은 2000년 63.1%에서 2005년 71.1%, 2010년 69.7%에 이어 2015년 73.4%로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3개 세목의 세수기여도가 지속적·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이들 3개 세목의 세수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전통적으로 세수규모(비중)가 가장 큰 세목이다. 다만 2015년에는 소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세수규모가 큰 세목으로 순위가 변동하였다. 2014년까지만 해도 부가가치세가 상당한 차이로 소득세와 법인세보다 세수비중이 컸지만,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의 세수비중이 완만하게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소득세 비중과의 격차를 줄이다가 2015년에 순위가 역전되었다.

2000년 이래 소득세와 법인세는 세수규모(비중)가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세수비중 순위가 2~3위의 범위 내에서 자주 교차하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3년부터 세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소득세의 세수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법인세 비중을 크게 압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단일세목으로 가장 세수규모(비중)가 큰 세목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소득세의 세수가 가지적으로 급속히 증가한 데 근본원인이 있지만,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회복을 거듭하면서 세수비중이 위축되었던 것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세계금융위기 기간 직전 시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2007~2008년의 경우 GDP 대비 국세세수비중이 각각 15.5%와 15.1%로 세수비중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적도 있지만, 지난 15년 기간 동안 세수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GDP 대비 각 세목의 세수비중 추이



2. 소득세 부담 구조

본 절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를 대상으로 미시모의실험을 통해 추정된 개인별 소득세 부담액을 가구별로 합산한 통계를 기초로 소득세 부담 분포의 특성을 논의한다. 분석 대상 기간은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전국단위의 전 가구⁵⁾를 대상으로 하는 2006~2014년 기간으로 한다. 분포 특성은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와 실효세율 분포,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살펴본다. 세부담의 누진도는 전통적인 누진도 지표인 Suits 지수와, 1분위 부담액 대비 10분위의 세부담액 상대비를 나타내는 10분위배수를 사용하여 비교한다.

2006~2014년 동안 가구당 평균 시장소득⁶⁾은 약 3,429.9만원에서 4,305.6만원으로 연평균 (기하평균 기준) 2.88%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근로·종합소득세는 134.9만원에서 177.5만원으로 연평균 3.49% 증가하였다. 가구당 평균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의 (시장)소득탄력성은 1.21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소득증가율보다 세부담 증가율이 21/100 정도 더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세부담의 소득탄력성이 1을 초과한다는 점은 곧 시간이 경과할수록 실효세율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표 2>의 세 번째 블록에서 보듯이 실효세율은 2006년 3.93%에서 4.12%로 소폭 상승하였다.

5) 가계동향조사자료는 기본적으로 전국단위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농어가, 숙박업 종사가구 등 극히 일부의 가구 유형은 포괄대상에서 제외된다.

6) 시장소득은 노동시장에서 노동과 자본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소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해당된다.

시장소득의 상대격차를 나타내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지표로 10분위배수를 들 수 있다. 시장소득의 10분위배수는 2006년 14.1배에서 2010년 16.5배, 2014년 16.6배로, 약간의 등락을 보이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10분위배수가 2006년 311.3배, 2010년 630.1배, 2014년 749.5배로 추정된다. 근로·종합소득세의 10분위배수가 시장소득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은 근로·종합소득세 부담 분포가 누진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10분위배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누진도가 상당히 큼을 의미한다. 아울러 10분위배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는 점은 근로·종합소득세의 누진도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누진도의 확대가 반드시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승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의 제II장에서 성명재(2016)의 연구결과를 고찰해보았듯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근로·종합)소득세의 경우 누진도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음을 고려하면 오히려 누진도가 확대된 것은 자칫 소득재분배 효과를 희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10분위배수가 소득세의 누진도를 모두 대변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표 2>의 두 번째 블록에서 1분위의 근로·종합소득세 가구당 평균세부담액이 2006년 1만 9천원 수준에서 1만 1천원 수준으로 크게 하락(약 -42%)한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10분위의 평균 세부담은 591.5만원에서 824.5만원으로 39% 증가하였다.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10분위배수가 상승하기도 하였지만, 저소득층(1분위)의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면서 10분위배수가 극도로 확대된 측면이 매우 강하다.

다음 절에서 살펴볼 연구결과를 미리 인용하자면, 우리나라 근로·종합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득세제의 변화에 따라 공제·감면 등의 증가속도가 시장소득 증가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전되면서 저소득층의 세부담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세제상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10분위배수가 급격하게 상승한 데에는 세제상 요인 외에도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특성변화라는 조세체계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부분도 크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은퇴고령자 가구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저소득층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특히 1분위의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의 가구가 노인가구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성명재, 2015). 특히 인구고령화 요인과 관련해보면, 1분위의 구성원이 점차 은퇴고령가구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1분위 구성원 가운데 근로·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자(면세자 포함)의 가구비중이 낮아지면서 1분위의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액이 빠르게 감소한 측면도 있다.

정리하면, 지난 10년 기간 동안 근로·종합소득세의 세부담은 시장소득보다 빨리 증가하여 왔으며,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상대격차 또는 누진도를 나타내는 10분위배수는 시장소득에 비해 상대격차가 매우 커서 매우 누진적인 분포구조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격차의 크기도 짧은 기간 동안 매우 급속하게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소득세제 상의 실질세경감 효과(주로 공제 확대로 인한 과세자비율의 하락)와 저출산·인구고령화로 나타나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가 동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소득계층별 시장소득, 근로·종합소득세 분포 추이

(단위: 천원, %, 배)

시장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0분위/ 1분위
2006	5,938	11,905	17,040	21,937	27,696	33,175	39,296	46,600	55,675	83,729	34,299	14.1
2007	5,620	11,935	17,618	23,077	28,224	34,251	39,924	47,518	58,111	87,114	35,345	15.5
2008	5,336	10,976	17,269	23,022	28,425	33,679	40,409	48,296	59,368	89,950	35,671	16.9
2009	5,767	12,586	17,788	23,730	29,643	35,004	41,464	48,894	59,033	88,026	36,191	15.3
2010	5,537	12,062	18,570	24,179	30,623	35,685	43,370	51,097	62,097	91,516	37,471	16.5
2011	5,981	13,183	19,076	25,332	31,705	37,383	44,785	53,513	65,191	94,831	39,093	15.9
2012	6,779	13,359	20,536	27,251	33,087	40,401	47,079	55,044	67,831	101,632	41,300	15.0
2013	6,466	13,256	20,837	28,887	34,611	40,771	48,396	58,105	70,010	102,011	42,340	15.8
2014	6,414	13,525	20,939	28,187	34,951	40,516	49,349	58,379	71,999	106,336	43,056	16.6
근로· 종합소득세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0분위/ 1분위
2006	19	76	152	293	575	796	1,215	1,864	2,586	5,915	1,349	311.3
2007	17	86	193	398	602	983	1,379	1,871	3,077	6,618	1,523	389.3
2008	10	67	196	395	634	870	1,329	1,967	2,972	6,723	1,516	672.3
2009	12	67	164	266	489	684	1,115	1,720	2,527	5,762	1,281	480.2
2010	10	55	170	308	538	703	1,205	1,787	2,706	6,301	1,378	630.1
2011	11	80	169	365	603	809	1,347	2,017	3,058	6,444	1,490	585.8
2012	15	78	192	417	591	961	1,349	2,060	3,167	7,743	1,657	516.2
2013	18	80	240	432	732	1,064	1,570	2,338	3,518	7,656	1,765	425.3
2014	11	75	204	390	672	977	1,425	2,278	3,474	8,245	1,775	749.5
근로·종소세 /시장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0분위/ 1분위
2006	0.32	0.64	0.89	1.34	2.08	2.40	3.09	4.00	4.64	7.06	3.93	22.1
2007	0.30	0.72	1.10	1.72	2.13	2.87	3.45	3.94	5.30	7.60	4.31	25.1
2008	0.19	0.61	1.13	1.72	2.23	2.58	3.29	4.07	5.01	7.47	4.25	39.9
2009	0.21	0.53	0.92	1.12	1.65	1.95	2.69	3.52	4.28	6.55	3.54	31.5
2010	0.18	0.46	0.92	1.27	1.76	1.97	2.78	3.50	4.36	6.89	3.68	38.1
2011	0.18	0.61	0.89	1.44	1.90	2.16	3.01	3.77	4.69	6.80	3.81	37.0
2012	0.22	0.58	0.93	1.53	1.79	2.38	2.87	3.74	4.67	7.62	4.01	34.4
2013	0.28	0.60	1.15	1.50	2.11	2.61	3.24	4.02	5.02	7.51	4.17	27.0
2014	0.17	0.55	0.97	1.38	1.92	2.41	2.89	3.90	4.83	7.75	4.12	45.2

주: 1. 2006~201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성명재(2016a)의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추정된 결과치 기준임.

2. 1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 대상 기준

자료: 이은경·김종면·성명재·이창우(2016)의 〈표 21〉에서 부분 발췌하여 작성

3. 과세자비율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기초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과세자라 함은, 전체 소득자 중에서 결정세액이 양(+)의 값을 가지는 소득자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결정세액이 양(+)인 소득자 수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 이전 기간의 경우에는 결정세액 대신, 총소득금액이나 총수입 중에서 필요경비성 비용이나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산출한 과세표준이 양(+)의 값을 가지는 소득자 수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해주었다.

[그림 5]와 [그림 6]은 각각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전체 소득자 중 과세표준이 양(+)인 소득자의 비율과 결정세액이 양(+)인 소득자의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는 2014년 이전만 해도 세액공제의 범위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양(+)의 값을 가지는 소득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결정세액도 양(+)의 값을 가졌기 때문에 두 기준 사이의 근로소득자 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특히 2005~2013년의 경우 과세표준이 양(+)인 소득자의 비율과 결정세액이 양(+)인 소득자의 비율 차이는 0.1%p 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 두 기준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였다.⁷⁾ 물론 2006년과 2012년의 경우 그 차이가 각각 0.2%p와 0.5%p로 증가하기도 하였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여전히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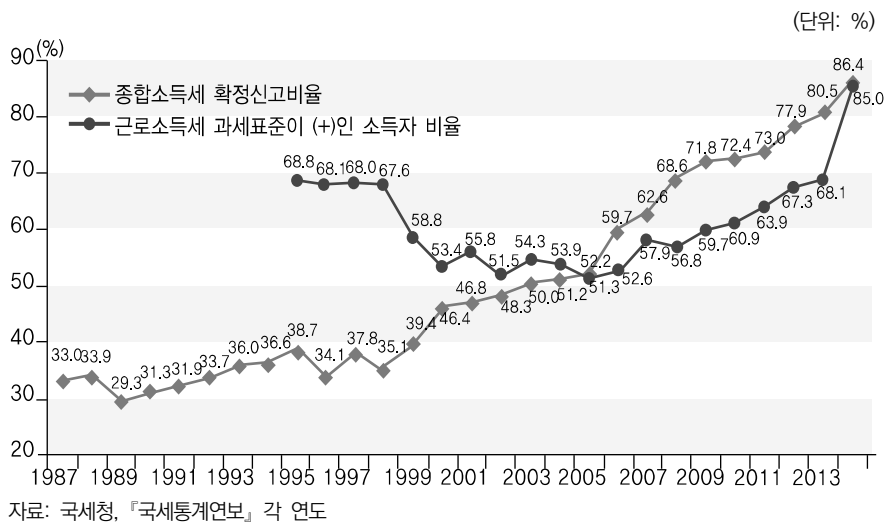
2014년 귀속분 근로소득세부터 소득세제 공제방식이 크게 개편되었다. 2013년까지 소득공제의 형태로 공제되던 상당수의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특별세액공제라는 명목으로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한계세율이 낮은 근로소득세의 한계과세자로 분류되던 소득자 중 상당수가 특별세액공제로 공제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특별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폭넓게 나타나면서 양(+)의 과세표준을 지닌 근로소득자와 양(+)의 결정세액을 지닌 근로소득자 사이의 숫자가 크게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특히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상당수가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되어 적용되기 시작한 2014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세자비율이 전년도(2013년)의 67.6%에서 51.9%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10년 기간 동안 과세자비율이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상승추세를 보여 주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2014년 51.9%의 과세자비율은 2005년의 51.0%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과세자비율이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결과를 보여준다.

2005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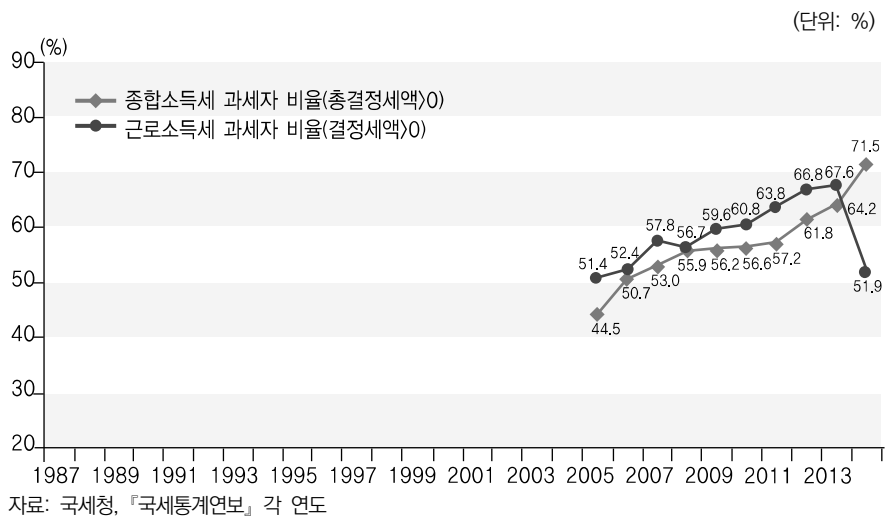
7) 그러나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두 비율의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다. 일례로 두 비율이 2005년에는 각각 52.2%와 44.5%(차이 7.7%p), 2007년에는 62.6%와 53.0%(차이 9.6%p)로 양자의 차이가 상당히 컸다. 두 기준의 비율차이는 2008년부터 가시적으로 확대되어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부터 최근(2014년 귀속분)까지는 두 비율의 차이가 15~16%p에 이를 정도로 크게 확대되었다.

에서 보듯이 2005~2013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양(+)의 소득자의 비율과 과세자비율의 차이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던 것을 보면, 2005년 이전의 과세표준 양(+)의 소득자비율을 과세자비율의 대리변수로 보아도 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동 비율은 1995년부터 이용가능하다. 1995년 현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양(+)인 근로소득자의 비율은 68.8%였다. 이는 2013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의 과세자비율(67.6%)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후 동 비율은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1999년부터 급락하여 2005년 51.3%에 이를 때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1998년의 경제위기 이후 근로소득세의 공제확대 등을 통한 면세점이 크게 확대되면서 과세자비율이 크게 하락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림 5] 근로·조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과세표준이 양(+)인 소득자 기준)



[그림 6] 근로·조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결정세액 기준)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보듯이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의 각각 양(+)의 값을 가지는 소득자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양자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자비율은 2005년 44.5%에서 2010년 56.6%, 2014년 71.5%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전 기간의 경우에는 공식통계가 없어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198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과세표준이 양(+)의 값을 가지는 소득자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본 절에서는 근로·종합소득세의 계층별 집중도와, 세부담의 누진도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본다. 2014년 귀속분 소득을 대상으로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근로·종합소득세 납세신고 기초자료로부터 계층별 세부담 비중을 추계하여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누적비중, 즉 집중도를 살펴본다. 아울러 미시모의실험을 통해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추정결과를 살펴본다.

가.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집중도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자료에 수록된 총급여(근로소득세의 경우)와 종합소득 또는 종합소득수입금액 규모별 과세자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세부담 비중을 계산하여 동 세목의 세부담 집중도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표 3>은 근로소득세의 결정세액 집중도, <표 4>와 <표 5>는 각각 비교대상 구간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집중도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3개 표는 기준소득 또는 총수입금액 구간을 내림차순으로 재배열하고, 각각의 구간에 대응하는 소득자의 인원과 급여·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의 구성비중과 누적비율을 추정하였다.

먼저 근로소득세의 경우를 보면 총급여가 5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표 3>에서 최상위 2개 구간 기준)의 수는 전체의 0.04%에 불과한데 결정세액은 약 2조 3천억원(=1조 1,706억원 + 1조 1,157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의 9.0%를 부담한다. 총급여가 1억원 이상인 소득자(최상위 5개 구간 기준)의 수는 3.15%, 이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약 13조 1천억원(누적 기준)으로 전체의 51.64%에 이른다. 개인 총급여 수준이 5천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최상위 8개 구간 기준)의 수는 전체의 19.15%인데 이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90.09%에 이른다. 이상의 세부담 분포구조를 보았을 때 근로소득세 세수의 대부분(90% 이상)은 대략 상위 20%의 소득자가 부담함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총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종합소득자(표 4)의 최상위 1개 구간 기준)의 수는 전체의 2.59%인데, 이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의 세수는 전체의 42.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유비를 보인다. 총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자(최상위 4개 구간 기준)는 전체의 28.49%에 이르고 이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전체의 92.13%에 이른다.

총수입금액은 실제의 소득이 아니라 비용이 포함된 매출 등의 사업규모의 외형을 나타낸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은 실제 소득자의 소득수준을 직접 나타내지 않으므로 외형을 통째로 소득을 이해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표 5>는 총수입금액에서 각종 필요경비 등 비용을 공제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산출된다. 종합소득금액은 일반인들이 흔히 소득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가까워진다.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계층별 종합소득세 부담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소득자(<표 5>의 최상위 2개 구간 기준)는 전체 소득자의 0.31%인데 이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6조 8,654억원으로 전체의 33.01%를 차지한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소득자(최상위 7개 구간 기준)는 8.6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부담하는 누적 종합소득세는 전체의 87.11%에 이른다.

이상에서 보듯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소수의 최상위 소득자(예를 들면 최상위 10% 또는 20% 이내)들이 세부담의 거의 대부분(대체로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집중구조가 극단적으로 높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근로소득세의 면세자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은 것도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에서 보듯이 면세자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성명재(2016)의 연구에서 시사하듯이 세부담의 누진도를 높게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소득재분배 효과 측면에서는 오히려 동 효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종합소득세 모두 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최상위 20% 이내의 고소득층이 대부분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그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과세자의 경우 실제적인 소득세 부담 기여도는 제한적이거나 매우 미미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근로소득세의 총급여 구간별 결정세액 부담비중 (2014년 귀속분 기준)

총급여 단위	인원		비율		누적		급여총계		비율		누적		결정세액		비율		누적		비율	
	명	%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10억원 초과	1,868	0.01	0.01	0.65	3,470,532	0.65	0.65	3,470,532	0.65	0.01	0.01	1.19	1,868	0.02	0.02	1,170,569	4.61	0.02	0.02	4.61
10억원 이하	5,565	0.03	0.04	1.35	3,714,348	0.70	1.35	3,714,348	0.70	0.01	0.01	2.42	5,565	0.09	0.09	1,115,732	4.39	0.09	0.09	9.00
5억원 이하	14,921	0.09	0.13	2.39	5,587,623	1.05	2.39	5,587,623	1.05	0.04	0.05	4.24	14,921	0.26	0.26	1,488,464	5.86	0.26	0.26	14.86
3억원 이하	33,429	0.20	0.33	3.90	8,017,255	1.50	3.90	8,017,255	1.50	0.11	0.16	6.72	33,429	0.64	0.64	1,824,693	7.18	0.64	0.64	22.05
2억원 이하	470,623	2.82	3.15	14.91	58,770,413	11.01	14.91	58,770,413	11.01	0.24	0.39	22.43	470,623	6.06	6.06	7,515,134	29.59	6.06	6.06	51.64
1억원 이하	500,078	3.00	6.15	23.30	44,788,824	8.39	23.30	44,788,824	8.39	3.32	3.71	33.17	498,992	5.76	11.82	3,636,398	14.32	11.82	11.82	65.95
8천만원 이하	1,197,670	7.18	13.33	38.89	83,230,754	15.59	38.89	83,230,754	15.59	3.52	7.23	51.19	1,183,494	13.66	25.48	4,296,543	16.92	25.48	25.48	82.87
6천만원 이하	971,995	5.82	19.15	48.97	53,797,252	10.08	48.97	53,797,252	10.08	8.44	15.67	61.63	912,296	10.53	36.01	1,832,438	7.21	36.01	36.01	90.09
5천만원 이하	600,497	3.60	22.75	54.36	28,756,099	5.39	54.36	28,756,099	5.39	6.85	22.52	66.85	516,498	5.96	41.97	736,200	2.90	41.97	41.97	92.99
4.5천만원 이하	717,321	4.30	27.05	60.11	30,708,361	5.75	60.11	30,708,361	5.75	4.23	26.75	72.18	566,176	6.54	48.51	608,729	2.40	48.51	48.51	95.38
4천만원 이하	1,873,935	11.23	38.28	72.42	65,659,329	12.30	72.42	65,659,329	12.30	5.05	31.81	82.93	1,258,446	14.53	63.03	769,476	3.03	63.03	63.03	98.41
3천만원 이하	2,798,469	16.77	55.05	85.45	69,590,440	13.04	85.45	69,590,440	13.04	13.20	45.01	93.05	1,775,183	20.49	83.53	336,016	1.32	83.53	83.53	99.73
2천만원 이하	1,954,610	11.71	66.76	91.93	34,541,398	6.47	91.93	34,541,398	6.47	19.63	64.64	97.01	1,161,038	13.40	96.93	64,649	0.25	96.93	96.93	99.99
1.5천만원 이하	2,054,004	12.31	79.07	96.86	26,332,965	4.93	96.86	26,332,965	4.93	13.43	78.07	99.42	266,103	3.07	100.00	2,705	0.01	100.00	100.00	100.00
1천만원 이하	3,492,094	20.93	100.00	100.00	16,761,268	3.14	100.00	16,761,268	3.14	13.53	91.60	100.00	52	0.00	100.00	48	0.00	100.00	100.00	100.00
계	16,687,079	100.00			533,726,860	100.00		533,726,860	100.00	8.40	100.00	100.00	8,663,243	100.00		25,397,795	100.00			100.00

주: 국세통계연보의 자료(표 4-2-4 기준)를 이용하여 가공한 저자추정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2015.

〈표 4〉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 구간별 결정세액 부담비중 (2014년 귀속분 기준)

총수입금액 단위	인원		비율		누적		총수입금액		비율		누적		결정세액		비율		누적		총결정세액		비율		누적		
	명	%	%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10억원 초과	151,397	2.59	2.59	36.99	332,637,935	36.99	36.99	34,156,001	23.59	23.59	23.59	23.59	32,640,225	27.36	27.36	27.36	27.36	8,752,968	42.09	42.09	8,817,089	42.00	42.00	42.00	42.00
10억원 이하	232,613	3.98	3.98	18.08	162,619,364	18.08	55.07	20,265,459	14.00	37.59	15.38	42.74	18,350,045	15.38	42.74	18.72	60.80	3,892,811	18.72	60.80	3,933,188	18.74	60.73	60.73	
5억원 이하	553,248	9.46	16.03	19.32	173,725,625	19.32	74.39	27,588,197	19.05	56.64	19.89	62.62	23,727,557	19.89	62.62	20.05	80.85	4,169,691	20.05	80.85	4,213,714	20.07	80.80	80.80	
2억원 이하	728,456	12.46	28.49	11.36	102,147,682	11.36	85.75	23,097,192	15.95	72.60	15.37	77.99	18,337,038	15.37	77.99	11.30	92.15	2,350,553	11.30	92.15	2,376,749	11.32	92.13	92.13	
1억원 이하	298,330	5.10	33.59	2.97	26,711,090	2.97	88.72	7,300,408	5.04	77.64	4.56	82.55	5,439,279	4.56	82.55	2.54	94.69	528,354	2.54	94.69	534,651	2.55	94.67	94.67	
8천만원 이하	414,110	7.08	40.68	3.20	28,757,027	3.20	91.92	8,274,759	5.72	83.35	4.93	87.48	5,884,367	4.93	87.48	2.17	96.87	452,209	2.17	96.87	458,855	2.19	96.86	96.86	
6천만원 이하	329,473	5.64	46.31	1.97	17,716,769	1.97	93.89	5,321,034	3.68	87.03	3.04	90.52	3,623,045	3.04	90.52	1.09	97.96	227,436	1.09	97.96	230,964	1.10	97.96	97.96	
4.8천만원 이하	284,838	4.87	51.18	1.39	12,513,760	1.39	95.28	3,866,125	2.67	89.70	2.14	92.66	2,557,336	2.14	92.66	0.66	98.62	136,878	0.66	98.62	138,426	0.66	98.62	98.62	
4천만원 이하	162,549	2.78	53.96	0.69	6,176,254	0.69	95.96	2,022,907	1.40	91.10	1.11	93.78	1,328,340	1.11	93.78	0.30	98.92	62,373	0.30	98.92	63,017	0.30	98.92	98.92	
3.6천만원 이하	603,686	10.33	64.29	1.99	17,932,842	1.99	97.96	6,220,297	4.30	95.39	3.35	97.12	3,993,278	3.35	97.12	0.74	99.66	153,069	0.74	99.66	154,488	0.74	99.65	99.65	
2.4천만원 이하	271,030	4.64	68.93	0.66	5,971,854	0.66	98.62	2,131,814	1.47	96.87	1.10	98.22	1,309,358	1.10	98.22	0.22	99.87	45,286	0.22	99.87	45,655	0.22	99.87	99.87	
2천만원 이하	209,296	3.58	72.51	0.43	3,878,337	0.43	99.05	1,351,722	0.93	97.80	0.64	98.87	768,074	0.64	98.87	0.07	99.95	14,831	0.07	99.95	15,056	0.07	99.94	99.94	
1.7천만원 이하	323,135	5.53	78.03	0.52	4,698,672	0.52	99.58	1,695,615	1.17	98.97	0.74	99.61	887,122	0.74	99.61	0.07	100.01	14,358	0.07	100.01	14,643	0.07	100.01	100.01	
1.2천만원 이하	124,012	2.12	80.15	0.15	1,372,087	0.15	99.73	504,950	0.35	99.32	0.19	99.80	228,544	0.19	99.80	0.01	100.03	2,770	0.01	100.03	2,855	0.01	100.03	100.03	
1천만원 이하	120,524	2.06	82.22	0.12	1,091,166	0.12	99.85	418,299	0.29	99.61	0.14	99.94	164,578	0.14	99.94	0.00	100.03	323	0.00	100.03	387	0.00	100.03	100.03	
8백만원 이하	245,855	4.21	86.42	0.15	1,343,790	0.15	100.00	567,938	0.39	100.00	0.06	100.00	72,549	0.06	100.00	-0.03	100.00	-6,089	-0.03	100.00	-5,951	-0.03	100.00	100.00	
계	5,052,552	86.42	86.42	100.00	899,294,254	100.00		144,782,717	100.00				119,310,735	100.00		20,797,821	100.00			20,993,786	100.00				
과세미달자	793,905	13.58																							
총계	5,846,457	100.00	100.00																						

주: 국세통계연보의 자료(표 3-2-1 기준)를 이용한 저차추정치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2015.

〈표 5〉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결정세액 부담비중 (2014년 귀속분 기준)

종합소득금액 단위	인원 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종합소득금액		백분율		누적백분율		결정세액		백분율		누적백분율	
		%	%	%	%	백만원	%	%	%	%	백만원	%	%	%	%		
10억원 초과	5,884	0.10	0.10	0.10	13,817,856	9.54	9.54	4,373,773	21.03	21.03	21.03	21.03					
10억원 이하	12,247	0.21	0.31	0.31	8,252,023	5.70	15.24	2,491,629	11.98	33.01	33.01						
5억원 이하	24,638	0.42	0.73	0.73	9,330,984	6.44	21.69	2,591,442	12.46	45.47	45.47						
3억원 이하	39,517	0.68	1.41	1.41	9,576,170	6.61	28.30	2,341,532	11.26	56.73	56.73						
2억원 이하	163,264	2.79	4.20	4.20	22,187,003	15.32	43.63	4,019,270	19.33	76.05	76.05						
1억원 이하	99,438	1.70	5.90	5.90	8,893,661	6.14	49.77	1,132,225	5.44	81.50	81.50						
8천만원 이하	159,911	2.74	8.64	8.64	11,073,094	7.65	57.42	1,167,815	5.62	87.11	87.11						
6천만원 이하	291,846	4.99	13.63	13.63	14,308,523	9.88	67.30	1,141,400	5.49	92.60	92.60						
4천만원 이하	113,700	1.94	15.57	15.57	4,263,564	2.94	70.25	287,381	1.38	93.98	93.98						
3.5천만원 이하	637,628	10.91	26.48	26.48	16,785,536	11.59	81.84	837,147	4.03	98.01	98.01						
2천만원 이하	1,046,979	17.91	44.39	44.39	14,990,907	10.35	92.19	333,200	1.60	99.61	99.61						
1천만원 이하	2,250,662	38.50	82.88	82.88	11,303,396	7.81	100.00	81,007	0.39	100.00	100.00						
0원 이하	206,838	3.54	86.42	86.42	0	0.00	100.00	0	0.00	100.00	100.00						
소계	5,052,552	86.42	86.42	86.42													
과세미달자	793,905	13.58	100.00	100.00													
총계	5,846,457	100.00	-	-	144,782,717	100.00	100.00	20,797,821	100.00	100.00	100.00						

주: 국세통계연보의 자료(표 3-1-4 기준)를 이용한 저차추정치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2015.

나.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근로·종합소득세의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6>에 정리한 바와 같다. 가계동향조사자료의 경우 기간별로 가구자료의 포괄대상 범위가 다르다. 1982~2002년에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구성되었으며, 2003~2005년의 3년간은 전국으로 조사대상지역의 외연이 확대되었으며, 2006년부터 최근까지는 단독가구까지 자료의 포괄범위가 확대되었다. 자료포괄대상 범위의 차이로 인한 구성편의(composition bias)를 방지하기 위해 <표 6>은 2인 이상 도시지역 거주가구와, 2006~2014년 동안 전국단위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두 가지 경우를 대상으로 논의한다.

먼저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도시거주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를 살펴본다. 근로·종합소득세의 누진도를 나타내는 Suits 지수는, 다소 등락을 보이기는 했지만(1982년 0.41647 → 1990년 0.34819 → 2000년 0.30521),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상승 반전의 모습을 보였다(2000년 0.30521 → 2005년 0.34440 → 2010년 0.35408 → 2014년 0.35769). [그림 7]에서 꺾인 선으로 연결된 선의 중심선을 연결하면 대체로 완만한 V자형 곡선을 보인다.

세전·세후소득의 지니계수 하락률로 측정한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1980년의 경우 추세적으로 상승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하락추세를 보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매우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런 모습은 [그림 7]의 막대로 표시된 것의 높낮이 변화에서 잘 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3~4%대 중반의 범위 사이에서 불규칙적인 등락을 보이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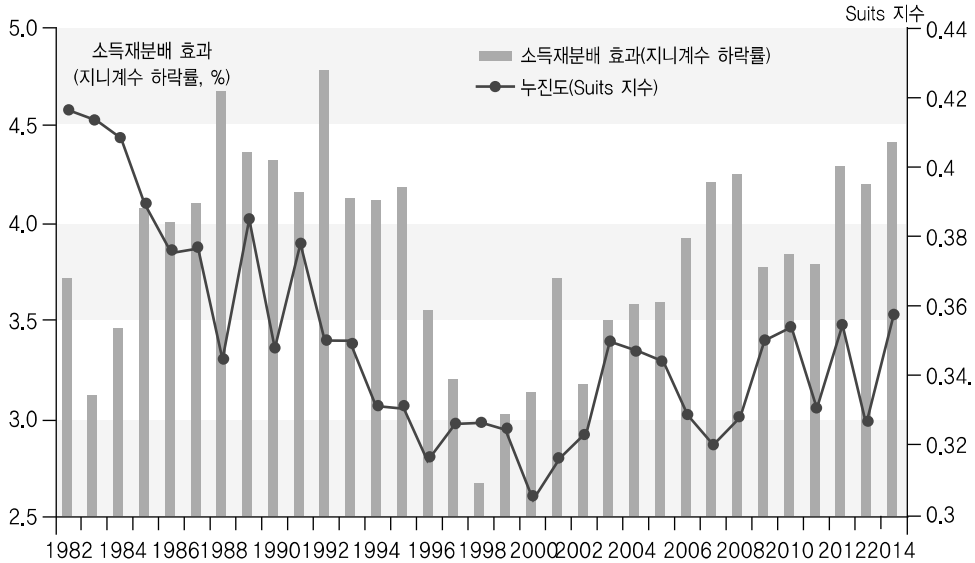
[그림 1]~[그림 3]과 같이 성명재(2016)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세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림 7]에 의하면 양자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기간도 상당히 많다. 해석상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서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세율체계가 주어진 상태에서 소득공제 체계의 변화에 따라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변화하는 경우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관계를 보인 것이지만, [그림 7]의 경우에는 세율체계 자체가 함께 변화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 1] 또는 [그림 2]에서 제시하는 역 U자 곡선 상에서의 움직임과, 하나의 곡선상의 점에서 다른 곡선상의 다른 점으로의 이동이 혼재되어 분리되지 않은 채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역의 상관관계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세율체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기간의 경우는 Suits 지수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의 움직임이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mirror image)로 상하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지니계수 및 소득재분배 효과, 누진도 지수(Suits 지수)의 변화 추이

	지니계수와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하락률)						Suits지수	
	2인 이상 도시가구			1인 가구 포함 전국가구			2인 이상 도시가구	전국가구
	총소득	근소·중소후	소득재분배 효과(%)	총소득	근소·중소후	소득재분배 효과(%)		
1982	0.28678	0.27613	3.71				0.41647	
1983	0.28270	0.27386	3.13				0.41331	
1984	0.28109	0.27136	3.46				0.40830	
1985	0.27563	0.26446	4.05				0.38953	
1986	0.27368	0.26273	4.00				0.37585	
1987	0.27986	0.26839	4.10				0.37701	
1988	0.27082	0.25817	4.67				0.34527	
1989	0.26957	0.25782	4.36				0.38504	
1990	0.25236	0.24145	4.32				0.34849	
1991	0.24189	0.23183	4.16				0.37836	
1992	0.24147	0.22991	4.79				0.35047	
1993	0.24242	0.23243	4.12				0.34924	
1994	0.24293	0.23293	4.12				0.33154	
1995	0.24280	0.23265	4.18				0.33144	
1996	0.24685	0.23808	3.55				0.31697	
1997	0.28102	0.27204	3.20				0.32640	
1998	0.31121	0.30293	2.66				0.32645	
1999	0.26726	0.25917	3.03				0.32559	
2000	0.27988	0.27112	3.13				0.30521	
2001	0.27222	0.26214	3.70				0.31637	
2002	0.27997	0.27108	3.18				0.32314	
2003	0.27893	0.26918	3.50				0.34985	
2004	0.28529	0.27508	3.58				0.34727	
2005	0.28959	0.27917	3.60				0.34440	
2006	0.29126	0.27982	3.93	0.32975	0.31876	3.33	0.32892	0.34324
2007	0.29499	0.28258	4.21	0.33331	0.32156	3.53	0.32058	0.33547
2008	0.29466	0.28214	4.25	0.33971	0.32820	3.39	0.32839	0.34091
2009	0.28994	0.27901	3.77	0.32952	0.31924	3.12	0.35040	0.36611
2010	0.29454	0.28323	3.84	0.33646	0.32595	3.12	0.35408	0.36211
2011	0.29334	0.28223	3.79	0.33238	0.32184	3.17	0.33127	0.34689
2012	0.29166	0.27916	4.29	0.33381	0.32224	3.47	0.35490	0.36905
2013	0.28619	0.27417	4.20	0.33272	0.32148	3.38	0.32753	0.34250
2014	0.28472	0.27219	4.40	0.33574	0.32386	3.54	0.35769	0.37303

-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추정치 기준임.
 2. 가계동향조사자료는 기간별로 자료의 포괄대상범위가 상이함. 1982~2002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 기준, 2006~2014년은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한 전국가구 기준임. 가구포괄범위의 차이로 인한 편의(bias)를 제거하고자 본 〈표〉에서는 2인 이상 도시지역 거주가구와, 전국단위의 전 가구 대상의 두 가지 기준의 경우를 추정·비교함.
 3. Suits 지수는 세부담의 누진도 또는 역진도를 나타내는 지수임.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짐. 양(+)의 값을 가지면 세부담이 소득누진적이며, 음수(-)이면 소득역진적, 0이면 소득비례적(중립적)임. 절대값이 커질수록 누진도 또는 역진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함.
 4. 도시 2인과 전국은 자료의 포괄대상이 각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 인 경우와 “전국 단위의 모든 가구(1인 가구 포함)”인 경우를 나타냄.

[그림 7] 근로·종합소득세의 누진도(Suits 지수)와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하락률) 추이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주: 1. 저자추정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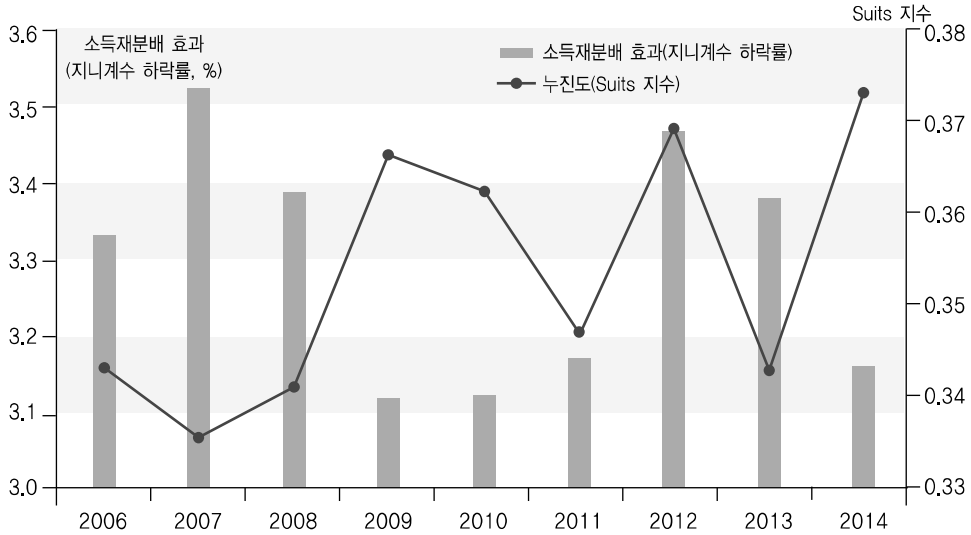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추정치 기준임.

3. Suits 지수는 세부담의 누진도 또는 역진도를 나타내는 지수임.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짐. 양(+)의 값을 가지면 세부담이 소득누진적이며, 음수(-)이면 소득역진적, 0이면 소득비례적(중립적)임. 절대값이 커질수록 누진도 또는 역진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함.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전 가구 대상으로 가구포괄범위로 확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8]에 잘 표현되어 있다.

2006~2014년 기간은 시계열이 짧아 정확한 변화 추이를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2년과 2014년에는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정(+)의 값을 보인다. 그런데 2012년에는 38%의 최고세율이 신설되었으며, 2014년에는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과표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조정되었다. 이는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역 U자 곡선의 상관관계가 다른 역 U자 곡선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2년과 2014년에는 공제의 변화와 세율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8] 근로·종합소득세의 누진도(Suits 지수)와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하락률) 추이
(1인 가구 포함 전국가구 기준)



주: 1. 저자추정치 기준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추정치 기준임.

3. Suits 지수는 세부담의 누진도 또는 역진도를 나타내는 지수임.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짐. 양(+)의 값을 가지면 세부담이 소득누진적이며, 음수(-)이면 소득역진적, 0이면 소득비례적(중립적)임. 절대값이 커질수록 누진도 또는 역진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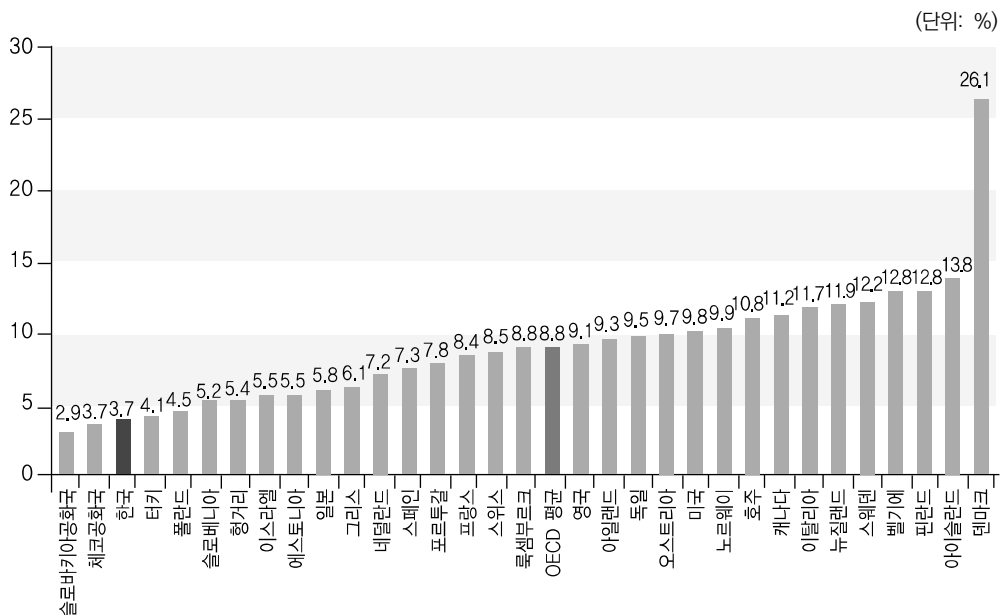
IV. 주요 선진국의 소득세 위상과 기능

본 장에서는 주요국의 소득세 세수비중과 소득불균등도, 소득세를 포함한 직접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세의 과세자비율과 누진도를 비교한다.

1. 소득세 세수비중의 국제비교

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덴마크가 26.1%로 가장 높고 아이슬란드와 핀란드가 각각 13.8%와 12.8%로 다음을 잇고 있다. 이와 반대로 슬로바키아는 2.9%로 가장 비중이 낮고 우리나라는 3.7%로 체코와 함께 두 번째로 비중이 낮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소득세수의 비중 평균은 8.8%이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득세 비중이 매우 낮은 국가 군에 속한다.

[그림 9]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의 국제비교(OECD, 2012년 현재)



자료: OECD (2015), Revenue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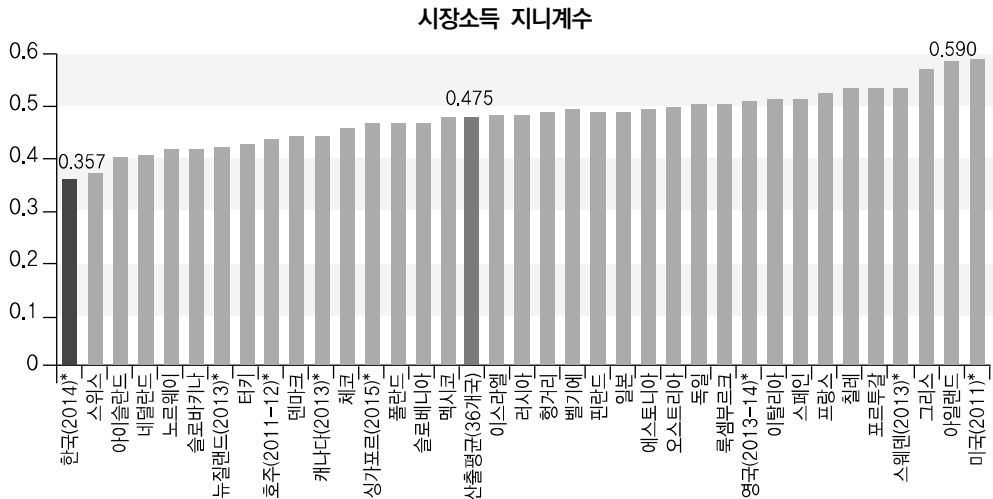
2. 소득불균등도의 국제비교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의 소득분배 상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림 10]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OECD IDD에서 추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를 비교하였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OECD IDD 정보 외에, 해당국가의 정부 공식통계치도 함께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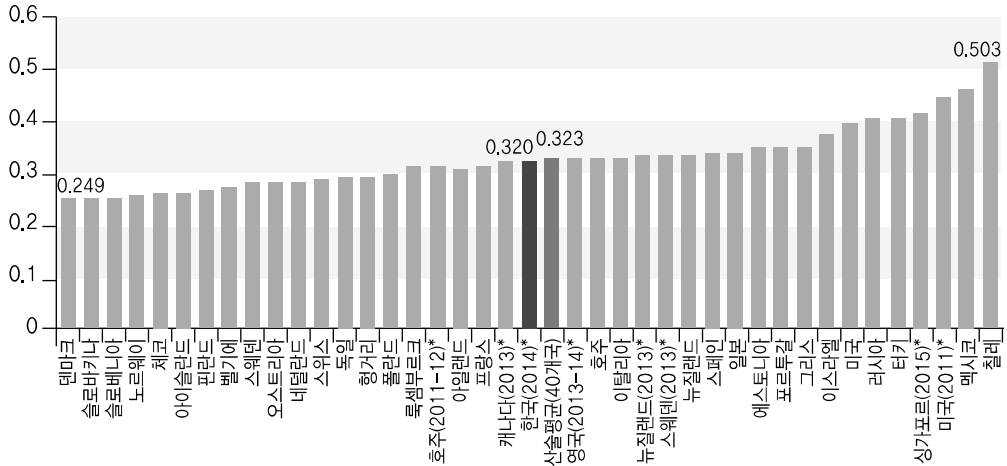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0.590, 2011년 Census Bureau 자료 기준)이고, 우리나라가 0.357(2014년 저자추정치 기준)로 가장 낮다. OECD 회원국 36개국에 대한 산술평균은 0.475이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칠레가 0.503으로 가장 높고, 덴마크가 0.249로 가장 낮다. OECD 회원국의 산술평균은 0.323, 우리나라는 0.320으로 평균치와 거의 유사하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사이의 지니계수 차이는 정부의 현금이전지출과 소득세를 포함한 직접세를 통한 공공부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OECD 회원국의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공공부문의 소득재분배 효과(지니 하락률)는 32.0%이다. 우리나라는 10.6%로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한다. 재분배 이전의 소득불균등도는 우리나라가 최저이지만, 재분배 후의 경우에는 OECD 중간 정도이다.

[그림 10] 소득불균등도의 국제비교 (OECD, 2012년, 지니계수 기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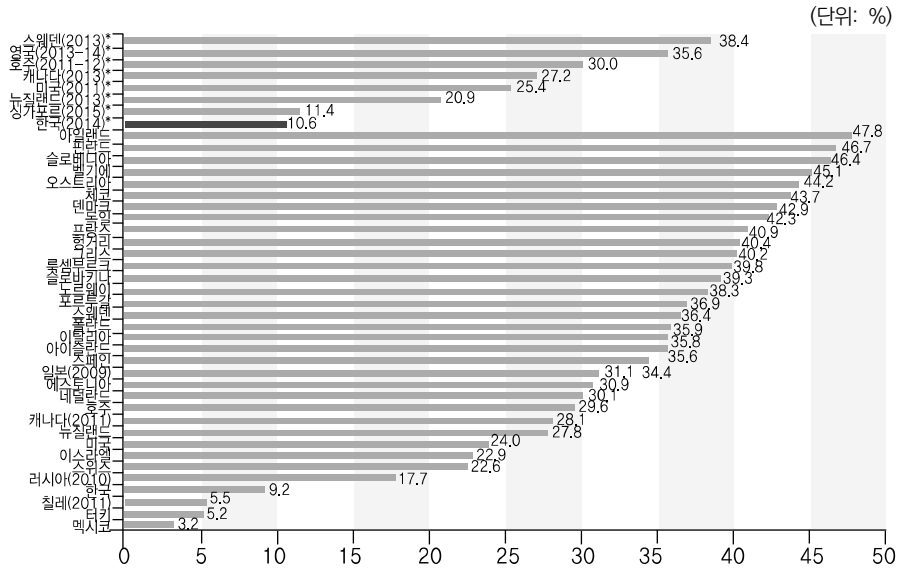


- 주: 1. * 표시한 것은 각국 정부 공식통계. 단, 한국*는 저자추정치 기준
 뉴질랜드: Table B.10, Perry (2015) Household Incomes in New Zealand-Trends in Indicators of Inequality and Hardship 1982 to 2014,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Statistics New Zealand, Wellington.
 미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4)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and Federal Taxes, 2011.
 스웨덴: <http://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Household-finances/Income-and-income-distribution/Households-finances/Aktuell-Pong/7296/Income-aggregate-19752011/163550/>
 싱가포르: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16) Key Household Income Trends, 2015.
 캐나다: Statistics Canada (2015) Gini Coefficients of Adjusted Market, Total and After-tax Income, Canada and Provinces.
 호주: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3) Household Income and Income Distribution 2011-12.
 영국: Tonkin (2015)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14-Methodology and Coherenc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the United Kingdom.
 한국: 저자 추정치(가계동향조사자료 추정결과)
 2. 나머지: OECD ID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2012년 소득 기준

공적이전소득과 직접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세전·세후소득의 지니계수 하락률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는 [그림 11]에 정리한 바와 같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국가는 아일랜드로 47.8%에 이르며, 핀란드, 슬로베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프랑스, 헝가리, 그리스가 40%를 초과한다. 이와 반대로 멕시코가 3.2%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작고, 터키, 칠레 등이 그 다음을 잇고 있다. 우리나라는 9.2%(2012년 OECD IDD 기준) 또는 10.6%(2014년 저자추정치 기준)로 그 다음 순위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2015년 정부 공식통계 기준)가 11.4%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크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현금이전지출 및 직접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한다.

[그림 11]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2012년, 지니계수 하락률)



- 주: 1. * 표시한 것은 각국 정부 공식통계. 단, 한국*는 저자추정치 기준
 주: 1. * 표시한 것은 각국 정부 공식통계. 단, 한국*는 저자추정치 기준
 뉴질랜드: Table B.10, Perry (2015) Household Incomes in New Zealand—Trends in Indicators of Inequality and Hardship 1982 to 2014,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Statistics New Zealand, Wellington.
 미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4)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and Federal Taxes, 2011.
 스웨덴: <http://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Household-finances/Income-and-income-distribution/Households-finances/Aktuell-Pong/7296/Income-aggregate-19752011/163550/>
 싱가포르: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16) Key Household Income Trends, 2015.
 캐나다: Statistics Canada (2015) Gini Coefficients of Adjusted Market, Total and After-tax Income, Canada and Provinces.
 호주: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3) Household Income and Income Distribution 2011–12.
 영국: Tonkin (2015)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14—Methodology and Coherenc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the United Kingdom.
 한국: 저자 추정치(가계동향조사자료 추정결과)
 2. 나머지: OECD ID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2012년 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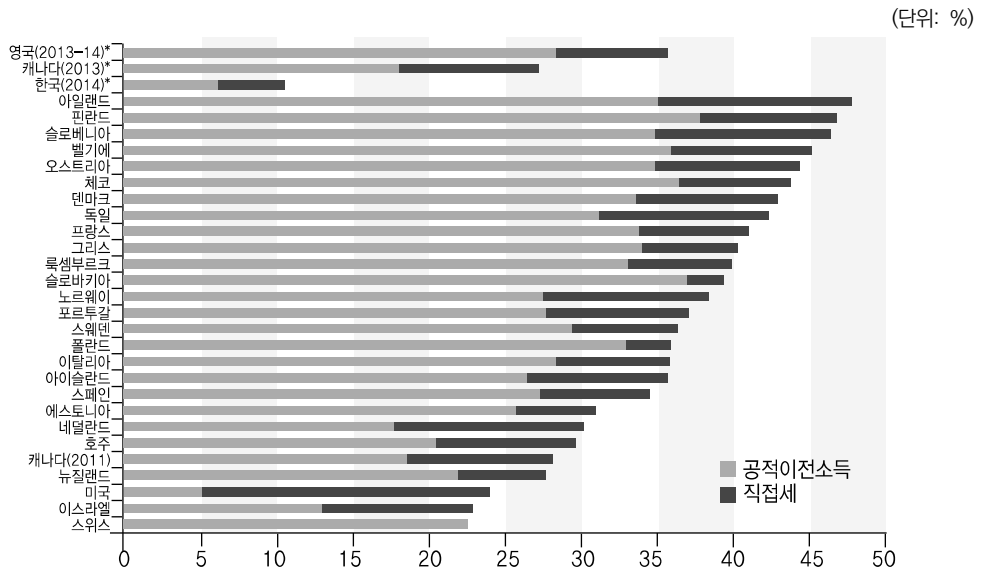
3.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그림 11]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공공이전지출(현금급여)과 직접세의 두 가지 분해하여 각각의 재분배 효과 기여도를 분해한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직접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현금의 형태로 지원된 공공이전지출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소득세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직접세보다 현금이전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출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큰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조세는 특성상 무차별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만을 선별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대다수가 면세자로 분류되는 최저소득층에 대해서

는 조세를 통해 지원해주는 것이 제한적이다. 반면에 재정지출은 지원대상을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은 지원액으로 선택적으로 지원대상을 구별하여 지원해주므로 일반적으로 지출규모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공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직접세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공적이전소득(현금급여)과 직접세 분해(2012년, 지니계수 하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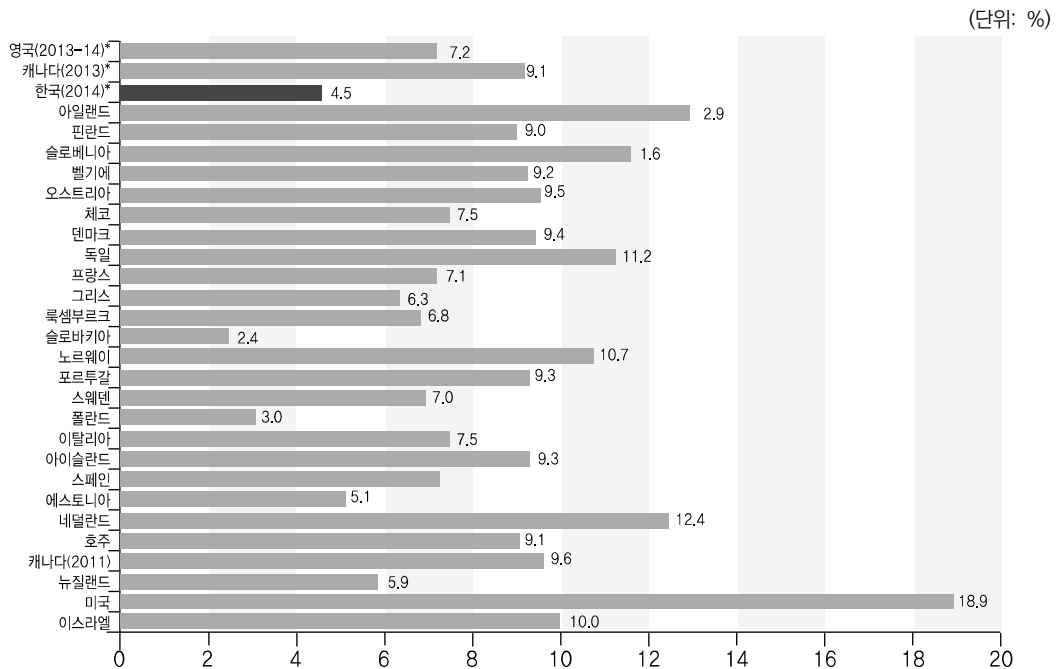


주: 1. * 표시한 것은 각국 정부 공식통계. 단, 한국*는 저자추정치 기준
 뉴질랜드: Table B.10, Perry (2015) Household Incomes in New Zealand-Trends in Indicators of Inequality and Hardship 1982 to 2014,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Statistics New Zealand, Wellington.
 미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4)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and Federal Taxes, 2011.
 스웨덴: <http://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Household-finances/Income-and-income-distribution/Households-finances/Aktuell-Pong/7296/Income-aggregate-19752011/163550/>
 싱가포르: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16) Key Household Income Trends, 2015.
 캐나다: Statistics Canada (2015) Gini Coefficients of Adjusted Market, Total and After-tax Income, Canada and Provinces.
 호주: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3) Household Income and Income Distribution 2011-12.
 영국: Tonkin (2015)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14-Methodology and Coherenc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the United Kingdom.
 한국: 저자 추정치(가계동향조사자료 추정결과)
 2. 나머지: OECD ID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2012년 소득 기준

소득세만을 대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공하는 OECD 자료가 이용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포함한 직접세를 기준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직접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우리나라가 4.5%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국가는 슬로바키아(2.4%)와 폴란드(3.0%)의 2개국이다. 이들 두 나라를 제외하면 여타의 OECD 회원국의 직접세 소득재분배 효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다.

미국이 18.9%로 가장 크며, 아일랜드와 네덜란드가 각각 12.9%와 12.4%로 그 순위를 보이고 있고, 10% 내외 수준에서 많은 국가들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소득세 규모(GDP 대비 세수비중)가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고, 직접적인 비교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제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소득세의 집중도(누진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해보면, 과도하게 높은 면세점과 누진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소득세의 세수가 희생되었으며 그 결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아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림 13] 직접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비교(2012년, 지니계수 하락률)



- 주: 1. * 표시한 것은 각국 정부 공식통계. 단, 한국*은 저자추정치 기준
 뉴질랜드: Table B.10, Perry (2015) Household Incomes in New Zealand-Trends in Indicators of Inequality and Hardship 1982 to 2014,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Statistics New Zealand, Wellington.
 미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4)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and Federal Taxes, 2011.
 스웨덴: http://www.scb.se/en_/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Household-finances/Income-and-income-distribution/Households-finances/Aktuell-Pong/7296/Income-aggregate-19752011/163550/
 싱가포르: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16) Key Household Income Trends, 2015.
 캐나다: Statistics Canada (2015) Gini Coefficients of Adjusted Market, Total and After-tax Income, Canada and Provinces.
 호주: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3) Household Income and Income Distribution 2011-12.
 영국: Tonkin (2015)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14-Methodology and Coherenc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the United Kingdom.
 한국: 저자 추정치(가계동향조사자료 추정결과)
 2. 나머지: OECD ID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2012년 소득 기준

4. 과세자비율 및 누진도 변화추이

본 절에서는 각국의 소득세 과세자비율과 소득세의 누진도 지수로 가장 단순한 형태인 소득세 10분위배수를 기초자료가 이용가능한 영국과 비교한다.

가. 소득세 과세자비율

본 항에서는 각국 정부의 공식홈페이지에 등재된 과세정보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의 변화 추이를 비교하였다. 정부의 공식통계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지 않다. 비교대상은 자료가 이용가능한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싱가포르, 영국,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7개국으로 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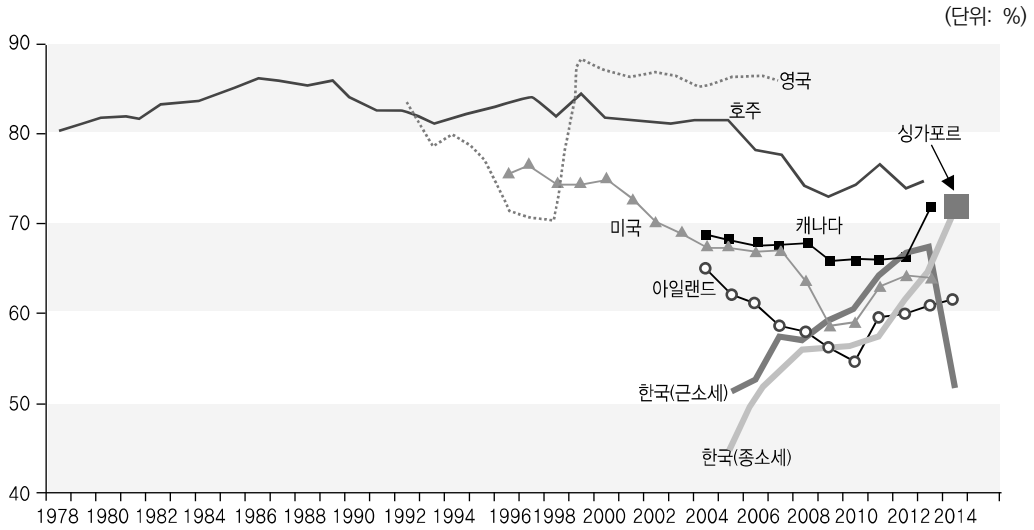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주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체계 하에서 합산하여 과세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종합과세를 요하는 여타 종류의 소득을 함께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면, 소득의 귀속년도 이듬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또는 면세자)비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반면에 외국에서는 그런 구분 없이 통합하여 소득세 과세자비율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은 각각 51.9%와 71.5%이다. 다만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의 경우 최근 수년 동안 과세자비율이 급속히 상승하였을 뿐,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과세자비율이 50%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등 과세자비율이 매우 낮았다. 비교대상 7개국 중 아일랜드만이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보다 과세자비율이 낮을 뿐, 나머지 비교대상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소득세 과세자비율이 현저한 차이로 높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이 매우 높다. 영국의 경우에는 과세비율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고 호주의 경우에는 80% 수준으로 역시 매우 높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70% 수준이다. 미국은 1990년대만 해도 소득세 과세자비율이 70%대 후반 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나, 2000년대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60%대 초반 수준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을 주요 외국과 비교해보면, 비록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자비율이 빠르게 상승하였지만 외국에 비해 과세자비율이 아직 낮은 편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더욱이 2014년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상당수를 특별세액공제 방식으로 공제방식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비율이 급전직하하였다. 그럼으로써 외국의 소득세 과세자비율과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림 14]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자비율 비교



자료: 호주-Australian Government website-taxstats 2014, Individual Table 1
 캐나다-Canada Revenue Agency
 아일랜드-Irish Tax and Customs
 싱가포르-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영국-UK HM Revenue and Customs
 미국-US Internal Revenue Service, Department of Treasury,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numerous years
 한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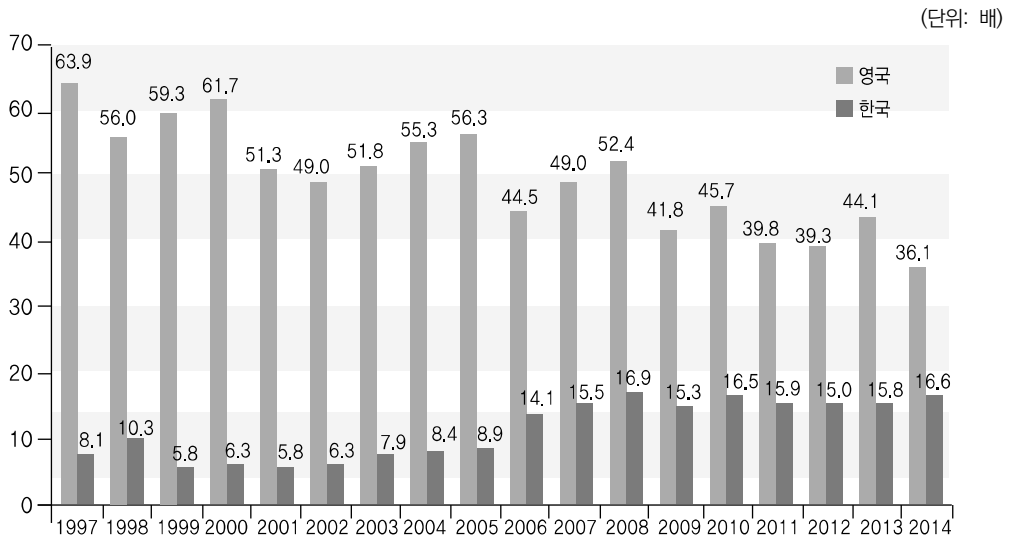
나. 10분위배수의 비교

소득세만을 대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하거나 누진도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다만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영국 통계청에서는 일반 가계가 부담하는 주요 세목 및 재정지출 항목을 대상으로 매년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분포와 재정지출수혜 분포를 제공해주고 있다.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 지표로 많이 활용되는 Suits 지수 등과 같은 지수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소득계층별 부담분포로부터 10분위배수와 같은 매우 단순한 형태의 누진도 지수는 비교가능하다. 소득세의 누진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시장소득의 상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시장소득의 10분위배수를 살펴보고(그림 15), 이어서 소득세의 10분위배수(그림 16)를 비교한다. 비교대상 기간은 두 국가 사이에 자료가 모두 이용가능한 1997~2014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소득의 10분위배수는 영국이 1997년 63.9배, 2005년 56.3배, 2010년 45.7배, 2014년 36.1배로 상대소득분배격차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분배격차가 크게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시장소득의 10분위배수 값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10분위배수는 1997년 8.1배, 2005년 8.9배, 2010년 10.5배, 2014년

10.6배로 완만하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 국가 사이에 시장소득 10분위배수의 절대수준 차이가 매우 크지만 변화의 방향성은 두 나라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15] 시장소득 10분위배수 변화 추이: 영국과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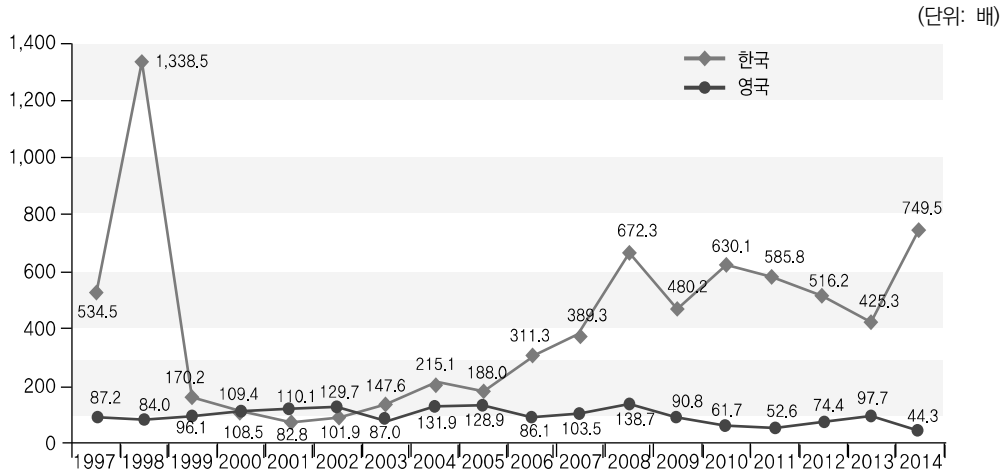
자료: 영국-영국 통계청(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numerous years.)
한국-저자 추정치

한편 소득세(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산한 것 기준)의 10분위배수는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높은 수치를 시현하였다. 1997~1998년의 경제 위기 기간은 소득분배구조와 세부담 분포가 예외적·비정상적으로 특이값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10분위배수는 급속하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영국에서 소득세의 10분위배수가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소폭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 국가 사이에 시장소득의 10분위배수 격차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의 10분위배수도 시장소득의 경우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 추이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소득의 경우에는 영국의 10분위배수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더 큰 수치를 보였다. 반면에 소득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현저하게 큰 차이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해도 소득세의 10분위배수는 두 국가 사이에 거의 비슷한 수준(100배 부근)을 보였지만,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의 10분위배수가 급속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동 배수가 평균적으로 500배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2000년대 초 100배 부근의 수준을 보이던 것이 2010년대에는 40~60배 부근(단, 2013년에는 일시적으로 97.7배)으로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에서 보듯이 영국의 경우 직접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7.2%로 우리나라(4.5%)보다 더 높지만, 누진도(10분위배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다. 한편 영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9.1%([그림 9])로 우리나라(3.7%)보다 훨씬 더 크다는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다준 요인이 아닌가라고 해석된다. 즉,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누진도도 중요하지만, 세수규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6] 소득세 10분위배수의 변화 추이: 영국과 한국



자료: 영국-영국 통계청(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numerous years.)

한국-저자 추정치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일반적으로 소득세 부담분포와 구조가 누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집중도와 누진도가 극단적이다 싶을 정도로 높고, 소득세 면세자비율이 높은 반면 과세자비율이 낮은 이유는, 세부담 분포를 누진적으로 만들수록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점은, 높은 세부담의 누진도 처방이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성명재(2016)의 연구에서 모의실험을 통해 검증한 바와, 본 연구에서 소득세 부담구조의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일반적 예상과 달리,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선진국에서는 소득세 부담의 집중도·누진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보다 과세자비율이 더 높고 소득세의 세수규모(예: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도 훨씬 크다. 이런 점들은,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가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소득세 부담구조의 누진도가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부담의 고소득층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소득세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좁은 세원, 높은 (한계)세율”에 의존한다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다수를 면세자로 유지하는 세제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데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정작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소득세 부담구조의 국제비교를 통해 확인한 바를 요약·정리하면, 우리나라의 (근로·종합)소득세 부담구조의 특징은 “높은 누진도와 면세자비율, 그리고 낮은 소득세 비중과 소득재분배 효과”로 집약된다. 전자의 주된 이유가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높이고자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는 정책의도가 세제구조에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취지에서 전개되었던 정책방안이 본래의 의도와 달리 정반대의 결과, 즉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기초해볼 때,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상화(강화)하기 위해서는 세부담의 누진도와 집중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개세주의 원칙’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소득세 과세자의 저변을 넓힘으로써 세수비중을 확대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로서 현재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완화되더라도 결코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김재진, 「연말정산 대란과 보완대책, 그리고 남은 과제들」, 『재정포럼』, 제241호 (2016년 7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pp. 6-33.

성명재,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02-01, 한국조세연구원, 2002.

성명재, 『소득세 개편의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6.

성명재, 「근로종합소득세의 세제지원 효과 연구」, 『세무학연구』, 제24권, 제4호, 2007, pp. 295-336.

성명재, 「1990년대 이후 정부별 소득세 개편이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에 미친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4권, 제1호(통권 제68호), 2011(a), pp. 111-152.

성명재, 『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연구』, 연구보고서 11-03, 한국조세연구원, 2011(b).

성명재, 「인구·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사회과학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제22권, 제2호, 2015, pp. 215-236.

성명재,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재정학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89호), 2016, pp. 47-77.

성명재·김현숙,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소득·부동산자산 결합분포 및 관련 세부담 분포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6-02, 한국조세연구원, 2006.

성명재·박형수·전병목, 『조세제도가 소득분배 및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4.

성명재·이명현,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추정에 관한 연구: 지니계수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1.

성명재·전영준,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연구보고서 98-02, 한국조세연구원, 1998.

성명재·전영준,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과표양성화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09-02, 한국조세연구원, 2009.

전병목,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2005년 1월호 (제103호), 한국조세연구원, 2005, pp. 66-80.

전병목·원종학, 『근로소득세의 공제체계 정비방안』, 연구보고서 03-03, 한국조세연구원, 2003.

전영준·김재진,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1.

[해외문헌]

Kim, N. & J. Kim, "Top Incomes in Korea 1933-2010,"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2014.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2008.

OECD, Taxing Wages 2008-2009, 2010.

OECD,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2011.

OECD, Income Inequality and Growth: The Role of Taxes and Transfers, OECD Economics Department Policy Notes, No. 9, 2012.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4, 2015.

OECD, Taxing Wages 2013-2014, 2015.

Paturot, D., K. Mellbye, and B. Brys, "Average Personal Income Tax Rate and Tax Wedge Progression in OECD Countries,"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No. 15, OECD Publishing, 2013. (<http://dx.doi.org/10.1787/5k4c0vhzsq8v-en>)

Piketty, T.,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3rd edition, Belknap Press, 2014.

Piketty, T. and E. Saez,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3-1998,"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8467, 2001.

Piketty, T., E. Saez and S. Stantcheva, "Optimal Taxation of Top Labor Incomes: A Tale of Three Elasticities,"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17616, 2013.

Saez, E., "Top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over the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3(2-3), 2005, pp. 402-411.

Sung, M. J. & K. Park,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57, No. 2, 2011, pp. 345-363.

[웹사이트]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

캐나다 국세청: <http://www.cra-arc.gc.ca/>

영국 국세청 & 통계청: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

호주 국세청 & 통계청: <https://data.gov.au/dataset/taxation-statistics>
<http://data.gov.au/dataset/>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

아일랜드 국세청: <http://www.revenue.ie/revsearch/>
<http://www.revenue.ie/en/about/statistics/>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부 록 1. 기본소득 논의 동향(스위스)

〈부표 1〉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자비율 비교

(단위: %)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싱가폴	영국	미국	한국	
							근소세	종소세
1978	80.3							
1979	81.2							
1980	81.8							
1981	81.8							
1982	83.1							
1983	83.3							
1984	83.8							
1985	84.9							
1986	86.1							
1987	86.0							
1988	85.4							
1989	85.7							
1990	83.6							
1991	82.5							
1992	82.6				83.1			
1993	81.0				78.6			
1994	81.7				79.8			
1995	82.5				78.0			
1996	83.3				71.1	75.5		
1997	83.8				70.7	76.3		
1998	81.9				70.1	74.6		
1999	84.4				87.9	74.4		
2000	81.8				87.0	74.8		
2001	81.7				86.4	72.8		
2002	81.4				86.6	69.9		
2003	81.0				86.2	68.9		
2004	81.4	68.7	65.1		85.2	67.4		
2005	81.3	68.2	62.1		85.8	67.4	51.1	44.5
2006	78.4	67.8	60.9		86.4	67.0	52.4	50.7
2007	77.6	67.6	58.4		86.1	67.3	57.8	53.0
2008	74.2	67.9	58.0		n.a.	63.6	56.7	55.9
2009	73.1	66.1	56.0		97.4	58.3	59.6	56.2
2010	73.9	66.0	54.7		97.0	59.1	60.8	56.6
2011	76.3	66.2	59.7		96.9	63.1	63.8	57.2
2012	73.8	66.4	60.0		97.0	64.2	66.8	61.8
2013	74.9	71.7	61.0		96.7	64.1	67.6	64.2
2014			61.4	72.3	97.2		51.9	71.5

자료: (호주) Australian Government website-taxstats 2014, Individual Table 1
 (캐나다) Canada Revenue Agency.
 (아일랜드) Irish Tax and Customs.
 (싱가포르)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영국) UK HM Revenue and Customs 2008-09회계연도 이후 분류체계 변경으로 상당수 면세자도 포함자료
 (미국) US Internal Revenue Service, Department of Treasury,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numerous years.
 (한국)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keri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
전화 : (대표)3771-0001 (직통)3771-0060 팩스 : 785-0270~1

